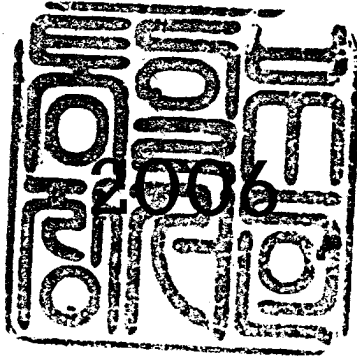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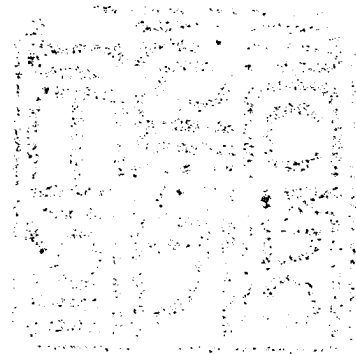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법규집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총 목 차

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조문대비) /1

- 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I. 남북한 왕래 /69

- II-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II-2.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 II-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II-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 II-5.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 II-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 II-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 II-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III. 교역 및 수송 /107

- III-1.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III-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III-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 III-4.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III-5.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 III-6.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에관한고시

IV. 협력사업 /171

- IV-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 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 IV-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IV-5.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

V. 남북협력기금법(조문대비) /213

- V-1. 남북협력기금법

- V-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 V-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VI. 남북협력기금관련 하위법규 /231

- VI-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VI-4. 교역손실보조금지급 취급기준
- VI-5.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 VI-6.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 VI-7.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VII. 남북합의서 /323

- VII-1. 남북기본합의서
- VII-2.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VII-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VII-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VII-3-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VII-3-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 VII-4-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VII-4-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VII-4-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VII-4-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VII-4-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 VII-4-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VII-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VII-4-8. 남북해운합의서
 - VII-4-9.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조문대비)

I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I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I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개 정 일 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정 1990. 8. 1. 법률 제4239호	제 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제 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1 차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1 차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1 차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2 차 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2 차 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2 차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 3 호
3 차 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50호	3 차 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3 차 개정 2002. 3. 4. 통일부령 제13호
4 차 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11호	4 차 개정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4 차 개정 2005. 11. 30. 통일부령 제32호
5 차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5 차 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	
6 차 개정 1998. 9. 16. 법률 제5559호	6 차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7 차 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16호	7 차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8 차 개정 2005. 5. 31. 법률 제7539호	8 차 개정 1995.12. 6. 대통령령 제14819호	
	9 차 개정 19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	
	10 차 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1 차 개정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	
	12 차 개정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13 차 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14 차 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8호	
	15 차 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3호	

목 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9
제2조 정의 9	제1조 목적 9	제2조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2조 출입장소 9	제2조의2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18
제4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10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 삭제
제5조 협의회의 구성 10	제3조 협의회의 회의 12	제4조 북한방문안내교육 19
제6조 협의회의 기능 11	제3조의2 협의회 위원의 임기 12	제5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20
제7조 협의회의 의사 12	제4조 의견의 청취 12	제6조 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20
제8조 실무위원회 13	제5조 수당 등 12	제7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1
제9조 남·북한 왕래 14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3	제8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21
제9조의2 남·북한 주민접촉 22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13	제9조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23
제10조 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26	제8조 준용규정 등 14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27
제11조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26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11조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31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29	제9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14	제12조 협력사업자승인증 32
제13조 반출·반입의 승인 29	제10조 증명서의 발급신청 16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49
제14조 반출·반입의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30	제10조의2 방문기간의 연장신청 18	
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31	제11조 대리신청 18	
제16조 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31	제12조 증명서발급의 협의 19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33	제12조의2 삭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35	제12조의3 북한을 수시방문하는 자의 신고의무..... 19	
제19조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37	제13조 편의제공..... 19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38	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20	
제21조 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38	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20	
제22조 통신역무의 제공..... 39	제16조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20	
제23조 검역등..... 41	제17조 증명서의 반납..... 21	
제24조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41	제18조 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21	
제25조 협조요청..... 41	제19조 접촉신고..... 22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42	제19조의2 접촉신고 유효기간..... 25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	제19조의3 접촉결과보고..... 25	
제27조 벌칙..... 47	제20조 특례조치..... 26	
제28조 양벌규정..... 48	제21조 출입심사공무원..... 26	
제28조의2 과태료..... 49	제21조의2 심사확인신청..... 27	
제29조 형의 감경등..... 50	제22조 출입심사..... 27	
제30조 북한주민의제..... 50	제23조 심사확인..... 28	
	제24조 휴대금지품의 고시..... 28	
	제4장 교역	
	제25조 삭제	
	제26조 반출·반입의 승인신청.....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31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 삭제 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31 제32조 삭제 제33조 청문 절차 32 제34조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33 제35조 삭제 제36조 협력사업의 승인절차 34 제36조의2 삭제 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35 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35 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36 제6장 보 칙 제40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37 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37 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3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38	
	제44조 협의 등..... 39	
	제45조 운행승인서의 발급..... 39	
	제46조 통신역무의 제공..... 39	
	제47조 통신역무의 요금..... 39	
	제48조 통신역무의 취급절차..... 39	
	제49조 수당 등..... 42	
	제49조의2 통계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요청.. 42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42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44	
	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45	
	제53조 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46	
	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 (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31></p> <p>제2조(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원인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1991.2.1, 1993.3.30, 1998.12.31, 2005.1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5.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행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體育·學術·經濟 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p> <p>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왕래·접촉·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目的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개정 2005.5.31></p> <p>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간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0.12.27, 2005.5.31></p> <p>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p>	<p>규정에 의한 개항</p> <p>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6.8.8, 1998.12.31></p> <p>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을 포함한 18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31></p> <p>②委員長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개정 1990.12.27, 2005.5.31></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 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p>④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개정 2005.5.31></p> <p>⑤協議會에 幹事 1人을 두되, 간사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개정 1990.12.27, 2005.5.31></p> <p>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개정 20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協議·調整</p> <p>3.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결정</p> <p>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p> <p>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p> <p>6. 南北交流·協力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p> <p>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p> <p>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p> <p>②協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의2(협의회 위원의 임기)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5.11.30></p> <p>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5조(수당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인 위원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하</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p> <p>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1.30></p> <p>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p> <p>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9조(남·북한 왕래)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횡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p>	<p>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p> <p>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준용규정 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남북한 왕래 등</p> <p>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삭 제></p> <p>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개정 1991.2.1, 1998.12.31, 2005.11.30></p> <p>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2001.10.31, 2005.11.30></p> <p>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이하“북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갈색</p> <p>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회 북한방문증명서 : 4면</p> <p>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 10면</p> <p>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한 방문증명서(이하 "남한방문증명서"라 한다) : 청남색</p> <p>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남한방문증명서 : 4면</p> <p>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 남한방문증명서 : 10면</p> <p>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⑤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수시 남한 방문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는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p> <p>⑥관광목적으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방문을 승인하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5.11.30></p> <p>⑦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는 이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5.11.30></p> <p>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남한주민 및 외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재외국민은 방문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8촌 이내의 친·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p>	<p>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5.12.6, 1998.12.31, 2001.10.31, 2005.1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인적사항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1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p>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p>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p>	<p>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④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 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10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p> <p>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p> <p>②대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p>	<p>제2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p> <p>제12조의2 <삭 제>.</p> <p>제12조의3(북한을 수시 방문하는 자의 신고의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10.31, 개정 2005.1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시북한방문신고서 2. 북한의 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북한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p>제13조(편의제공) ①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방문안내교육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p>	<p>제3조 <삭 제></p> <p>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1.10.31)</p> <p>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이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8.10.31></p> <p>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p> <p>제16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등) <개정 2001.10.31>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p>	<p>②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1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⑤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p>	<p>발급한다.<개정 2005.11.30></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1.30></p> <p>③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1.10.31></p> <p>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31></p> <p>제17조(증명서의 반납) 남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남한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 출입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동안 이를 소지할 수 있다.<개정 2005.11.30></p> <p>제18조(재외국민의 범위와 북한 왕래신고)</p>	<p>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p> <p>제7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p> <p>제8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p> <p>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5.31〕</p> <p>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p>	<p>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31, 신설 2005.11.30〉</p> <p>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출발하기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방문신고서 2. 그 밖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31〉</p> <p>제19조(접촉신고)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만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p>	<p>②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2. 인적사항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p> <p>④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신고를 수리하거나 수리를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①영 제19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2005.11.30〉</p> <p>⑤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0.31〉</p> <p>⑥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3.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5.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p>〈신설 2005.11.30〉</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6. 편지의 접수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p> <p>제19조의2(접촉신고 유효기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접촉목적에 따라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0.31></p> <p>제19조의3(접촉결과보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신고의 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p>	<p>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신고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 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10條(海外同胞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保有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p> <p>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 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p>	<p>“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로 본다.<신설 2001.10. 31></p> <p>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 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 2005.11.30></p> <p>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p>	<p>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p>	<p>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21조의2(심사확인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출입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11.30></p> <p>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p>	<p>제10조(출입신고서 등)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③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업무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확인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11.30></p> <p>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개정 1998.12.31></p> <p>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 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p> <p>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전문개정 2005.5.31]</p> <p>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교 역</p> <p>제25조 <삭 제></p> <p>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p> <p>②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③<삭 제></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5.31〕</p> <p>第14條(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의 공고 〔개정 2005.5.31〕) 통일부장관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정하는 경우 <p>⑤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함은 다음 각호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p>제27조 < 삭제 > 제28조 < 삭제 ></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개정 1990.12.27, 1996.12.30, 2005.5.31〉</p> <p>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승인을 要하는 品目 또는 禁止品目の 구분</p> <p>2. 승인을 要하는 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p> <p>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통일부장관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5.5.31〉</p> <p>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5.5.31〉</p> <p>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p>	<p>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2.1 1993. 3.6, 1998.12.31〉</p> <p>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3. 3.6, 1998. 12.31〉</p> <p>③〈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협력사업</p> <p>제30조 〈삭 제〉</p> <p>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p>	<p>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p> <p>2.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p> <p>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p>	<p>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32조 <삭 제></p> <p>제33조(청문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 2005.11.30></p> <p>②<삭 제></p>	<p>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p> <p>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p> <p>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p> <p>6.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p> <p>7.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p> <p>8.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05.5.31]</p> <p>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p>	<p>③그 밖의 취소에 대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의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11.30></p> <p>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p>	<p>연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1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당국의 확인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p>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제35조 <삭 제></p> <p>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11.30></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5.31)</p> <p>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 통일부장관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5.5.31></p> <p>② 통일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2005.5.31></p>	<p>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36조의2 <삭 제></p> <p>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1.2.1, 1998.12.31></p> <p>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계약의 체결</p> <p>2. 사업의 착수</p> <p>3. 사업진행상황</p> <p>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p> <p>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p> <p>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 2.1, 1998.12.31></p> <p>③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p> <p>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12.31, 2005.11.30></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7.12.13, 2005.5.31></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 칙</p> <p>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 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p>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4.12.23, 1998. 12.31></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27, 2005.5.31></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2.12.8></p>	<p>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 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22條(통신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추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44조(협의등) ①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운행의 상업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p> <p>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개정 1991.2.1, 1998.12.31></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5.11.30></p> <p>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8. 12.31, 2001.10.31〉</p> <p>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31, 2001.10.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2. 「우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3.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4.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역무 <p>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 및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1991.12.31, 2005.11.30〉</p> <p>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1.12.31, 1997.12.15, 1998.12.31〉</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 舶·航空機 荷物은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 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제35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2005.5.31></p> <p>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p> <p>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지원)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第25條(協調要請) 통일부장관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2005.5.31></p> <p>第26條(다른 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p>	<p>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9조의2(통계자료의 제공에 대한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한간에 이동하는 인원·물품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5.11.30></p> <p>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2005.5.31></p> <p>③南韓과 北韓間的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개정 1997.12.13, 1998.9.16, 20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환거래법」 2. 外國人投資促進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조세특례제한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等還給에 관한 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p>	<p>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2.1, 1998. 12.31></p> <p>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p>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큰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p>	<p>만, 반출되는 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0.31></p> <p>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0.23></p> <p>⑥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p> <p>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31></p> <p>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항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31, 1998.10.23, 1998.12.31></p> <p>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p> <p>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p> <p>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 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6조의2(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협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 조신설 2005.5.31)</p> <p>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5.5.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發給 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왕래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 	<p>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p> <p>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를 발급받거나 제13조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p> <p>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p> <p>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5.5.31></p> <p>1. <삭 제></p> <p>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p> <p>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p> <p>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科한다.</p> <p>第28條의2(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p>	<p>제5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신설 2005.11.30〉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통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5.5.31〕</p> <p>제29조(형의 감경 등) 제2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지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5.31〕</p> <p>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p> <p>附 則 <1990·8·1></p> <p>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p> <p>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p> <p>24.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p>	<p>부 칙 <1990·8·9></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p>	<p>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부 칙 <1990·11·9></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附 則 <1990·12·27>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國土統一院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2條 내지 第14條, 第15條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2項, 第19條第1項, 第20條第1項 및 第25條중 "國土統一院長官"을 각각 "統一院長官"으로 한다. 第4條 및 第5條第5項중 "國土統一院"을 각각 "統一院"으로 한다. ② 및 ③省略 第4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1992·12·8>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중 다음과 같이</p>	<p>부 칙 <19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3·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p>	<p>부 칙 <1991·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改正한다. 第21條중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를 “出入國管理法 第69條 내지 第76條”로 한다.</p> <p>④省略 附 則 <1994·12·31></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p> <p>第2條 및 第3條 省略</p> <p>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한다.</p>	<p>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부 칙 <1993·12·31></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내지 ④생략</p> <p>부 칙 <1994·12·23></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附 則 <1996·12·30> 第1條(시행일)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①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4條第1號중 "自動承認品目"을 削除하고, 同條第1號 및 第2號중 "制限承認品目"을 각각 "승인을 要하는 品目"으로 한다. 第9條 省略 附 則 <1997·12·13>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p>	<p>부 칙 <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1995·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 생략 부 칙 <1996·5·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1996·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附 則 <1998·9·16> 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租稅減免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이 법의 規定에 의한 租稅減免은 이 법 施行 후 최초로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서 이 법 施行日까지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施行日에 租稅減免申請 또는 租稅免除申請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第5條(申告受理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受理를 받았거나 승인·許可·보고·확인 또는 登錄 등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申告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부 칙 <1997·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199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98·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申告·승인·許可·확인 또는 登錄 등의 申請을 받아 그 節次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다.</p> <p>③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에 의하여 租稅減免決定 또는 租稅免除決定을 받은 것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적용한다.</p> <p>第6條 및 第7條 省略</p> <p>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26條第3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外國人投資促進法</p> <p>② 내지 ⑩省略</p> <p>第9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外資導入法중 外國人投資와 관련된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 인용된 規定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부 칙 <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申告를 한 者"를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p> <p>부 칙 <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 칙 <2005·11·30> 이 영은 2005.12.1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05·11·30> 이 규칙은 2005.12.1부터 시행한다.</p>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제3항관련)

구분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과태료액
1	법제9조제3항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한 자	300만원 이하
2	법제9조제5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 국민	300만원 이하
3	법제9조의2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100만원 이하
4	법제15조제2항	교역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5	법제18조제2항	협력사업자가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

[별표 1]

심사 확인인 (제10조제2항 관련)

(예시)

도착
2002. JAN 25
동해 016
법무부

(규격 30mm×20mm)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적 사항	성 명	(한자:) 성 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신 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② 동 반 자	직업 소속	직 위	(전화:)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 별 신 장 cm		
			cm		
③방문 대상자 인 사 항	성 명 나 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관계		
④방 문 목 적					
⑤방 문 경 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포함)					
⑥방 문 예 정 지 역 및 일 시					
⑦방 문 및 귀 환 예 정 경 로					
⑧방 문 계 획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⑨방 문 경 험 (과거 3년 이내)					
⑩방 문 사 유 (수시방문신청의 경우에 한함)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뒷 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p>					
통일부장관 귀하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수수료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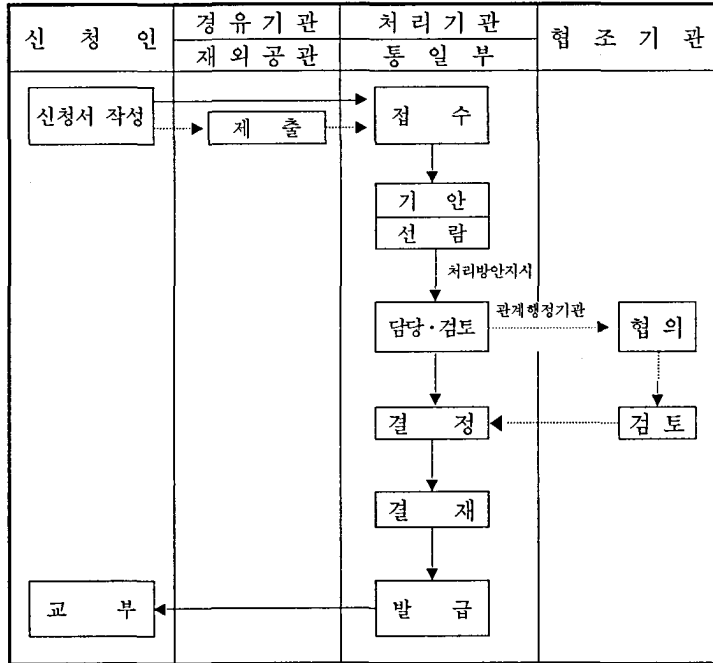
(뒷 면)

[별지 제1호의2서식]

- 첨부서류 : 1. 인적사항
 2.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1매 포함)
 3.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복환을 방문하는 자에 한합니다.)
 4. 복환의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인 적 사 항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성 명(한글)			사 진 3.5cm×4.5cm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재외국민)		동반자녀 사 진 2.5cm×3cm	동반자녀 사 진 2.5cm×3cm
성 별			
본 적			
주 소			
직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가 정		
	직 장		
	휴 대 폰		
신 장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관계	가입 단체명		
	직 책		
	군 별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직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출생지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 동반 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 진 2.5cm×3cm
				cm	
③ 방문 대상자 직항	성명	나이	관계	거주지	사 진 2.5cm×3cm
④ 방문 목적					
⑤ 방문 경위 (초청장, 방문알선 및 중개인 포함)					
⑥ 방문 지역 및 일시					
⑦ 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⑧ 방문 기간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남한지역의 법질서와 안내에 따를 것이며,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뒷 면</p> <p>년 월 일 신청인: ④</p> <p>수수료 없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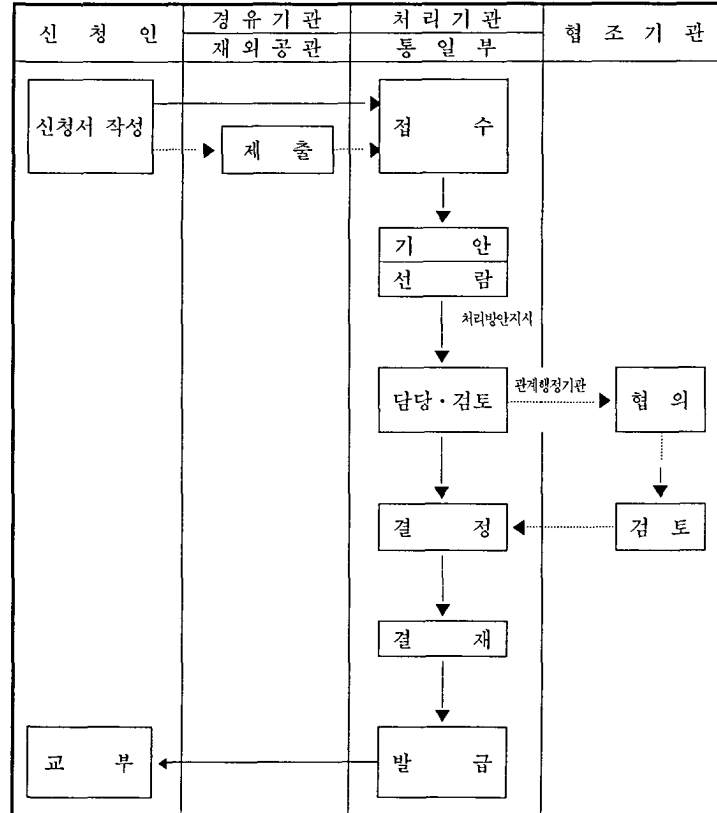
동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뒷 면)

- 첨부서류: 1.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1매 포함)
2. 동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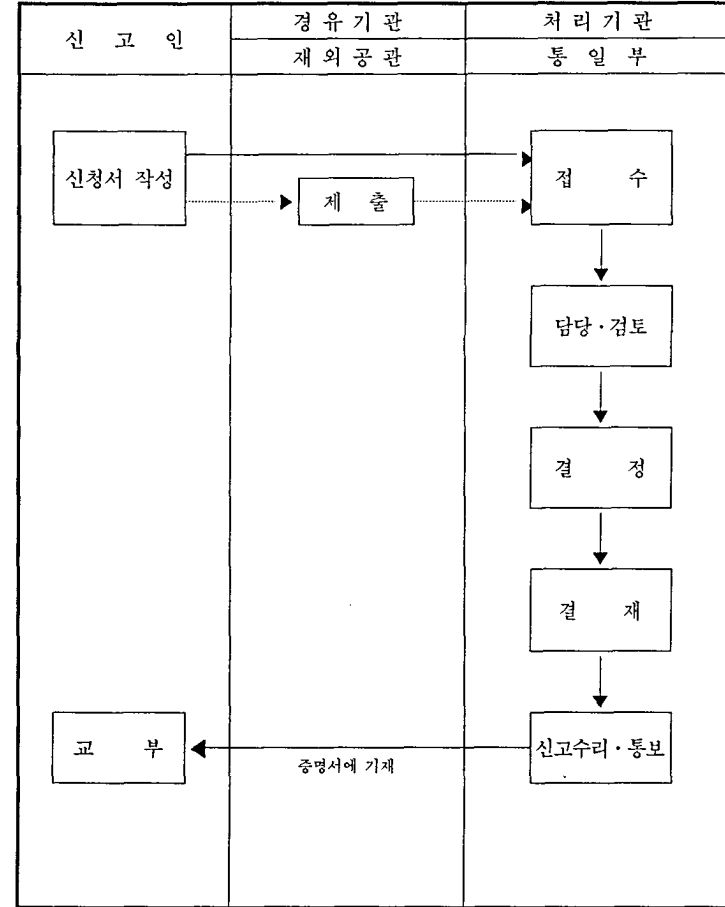


수시북한방문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처리기간	3일
		년	월	일	
① 신청자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② 방문증명서 발급번호					
③ 방문경위 (입북비자획득 등)					
④ 방문목적 (사유)					
⑤ 방문기간 (일정)					
⑥ 방문경로 (경유지 포함)					
⑦ 여행지 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을 신고하며, 이 신고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1부 또는 초청장 원본 1부 신고인 (인) (또는 서명)</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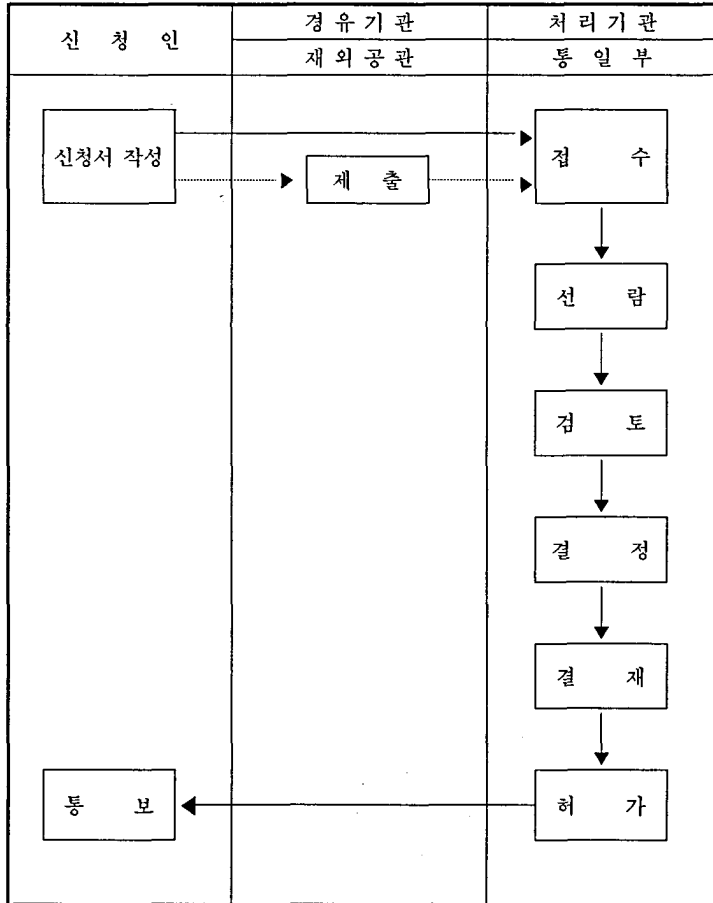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6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연락처	(전 화 :)				
	직 업	(전 화 :)				
②방문시 접촉인사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방 문 목 적						
④방 문 경 위 (초청기관 포함)						
⑤방 문 기 간 및 방 문 지 역						
⑥ 방 문 결 과 개 요(활동 및 협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⑦ 특 이 사 항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통일부장관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재외국민)

신고번호 :		신고일자 :		년	월	일
① 신고자	성명	성별		남·여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업	전화번호				
②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③방문경위 (입북비자획득 등)						
④방문목적(사유)						
⑤방문기간(일정)						
⑥방문경로 (경유지 포함)						
⑦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신고인 : ㉑(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center">통일부장관 또는 대사(총영사) 귀하</p>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연도(마지막 두자리)-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합니다.(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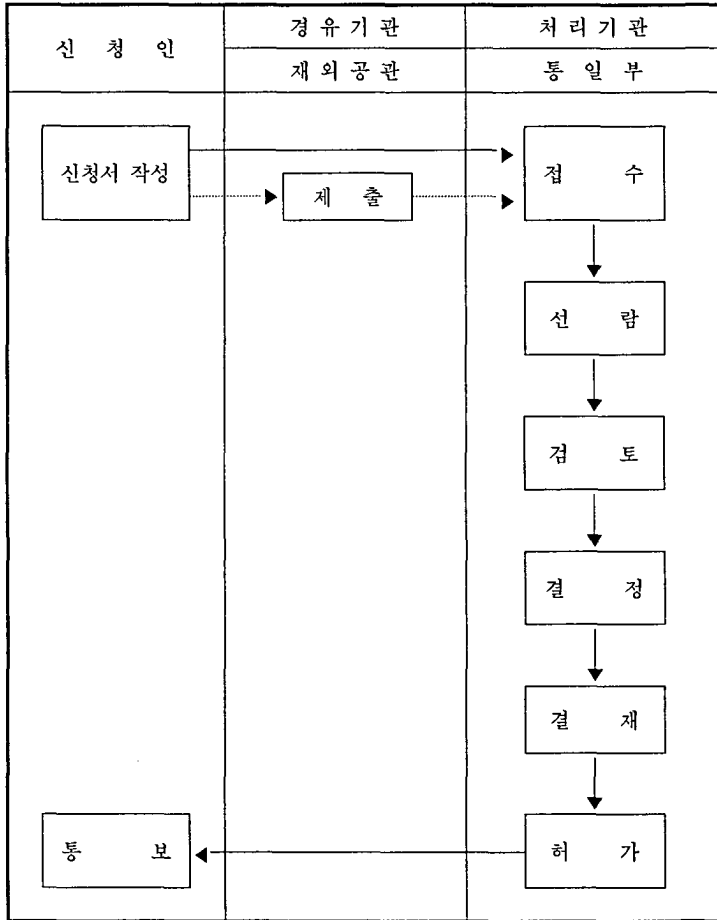
북한주민접촉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전화 :)					
②피접촉 예정인 인적사항	직업	(전화 :)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접촉목적							
④접촉경위							
⑤접촉일정 및 장소							
⑥접촉방법							
⑦접촉경험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과 접촉을 신고하며, 북한주민과의 접촉중 국가안 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right">년 월 일 신청인 : ㉑</p>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뒷 면) [별지 제10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①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주소·연락처	(전 화 :)			
	직 업	(전 화 :)			
②방문시 접촉인사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고인과의 관계
③접 촉 목 적					
④접촉일시및장소					
⑤접촉일시및장소					
⑥접 촉 방 법					
⑦ 접 촉 결 과 개 요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의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					
동일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신고서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성 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년	월	일	남·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업·직장명	
거주지 주소·전화번호			
방문지 주소·전화번호			
방문목적	출발지(탑승편명) ()		
방문예정기간	서 명		
공용란	심사인		

80mm×118mm
인쇄용지(OCR급)105g/m²

[별지 제12호서식]

교역보고서

보고자	① 상 호		② 무역업고유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보고사유				
보 고 개 요				
※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함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부 장 관 귀 하</p>				
첨부서류 : 물품의 반·출입실적서 1부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별지 제13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인

190mm×268mm
(인쇄용지(복급) 120g/m²)



Ⅱ . 남북한 왕래

- Ⅱ -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Ⅱ -2.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 Ⅱ -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Ⅱ -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 Ⅱ -5.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 Ⅱ -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 Ⅱ -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 Ⅱ -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II-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 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제3조(반입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4.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제4조(반출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제5조(제한적 휴대금지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된다.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락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제6조(물품의 보관)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제7조(보관물품의 처리)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과세 등에 대한 다른법령의 준용) 제5조에 의한 반출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 칙 <2005·9·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I-2. 남북한왕래자유대품통관에관한고시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2조와 관세법 제96조 제1호·제3호,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북한간 왕래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북한 주민 및 외국인(이하 "남북한왕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휴대품 신고 및 검사

제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등) ①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 또는 여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05.6.3. 개정>

1. 동반가족이 있을 때 1인이 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남북한왕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신고대상물품) 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입여부를 휴대품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9조에서 정한 특정물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농산물·한약재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
4.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서·영화·음반·조각물·사진·비디오테이프·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6.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7.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8. 앵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9. 동물(고기·가족·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기타 식품류·농림축수산물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예 : 옹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매·올빼미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핸드백 등)

11. 외국환거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12. 출경시 휴대반출 신고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

13. 남한지역으로 일시 입경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한 후 출경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또는 작업용품

14. 남한으로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 후 출경시 반출할 물품

② 당해연도에 5회이상 빈번히 입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왕래자가 제7조제1항의 입경횟수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이 없을 경우 이를 휴대품 신고서에 표시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6.3. 개정>

제5조(휴대품 검사) ① 세관장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2005.6.3. 개정>

②세관장은 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 또는 마약, 총기 등 반출입 규제물품 소지 혐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5.6.3. 개정>

③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 학생 등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05.6.3. 개정>

제3장 휴대품 통관

제6조(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 ①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은 남북한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남북한 왕래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2005.6.3. 개정>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본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한다.

제7조(남북한왕래자 1인당 면제금액 등) ①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의 전체 취득가격에서 1인당 US\$300을 면제하되, 당해연도 4회차 입경까지 허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빈번입경자에 대해 당해연도 면제횟수를 확인하여 입경횟수와 관계없이 연도별 4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 <2005.6.3. 개정>

②남북한왕래자가 제3국으로부터 북한을 거쳐 입경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여행자휴대품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면제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면세 통관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2.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3. 일시 입경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직

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제8조(특정물품의 면세범위) ① 다음 각호에 계기된 특정 물품의 면세범위는 품목당 기준에 의하되, 제7조제1항의 전체 취득가격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주류 : 1병(1리터 이하)
2. 담배 : 킬런 200개비, 엽킬런 50개비, 기타 담배 250그램
3. 향수 : 2온스
4. 농림축수산물·한약재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7조를 준용한다. <2005.6.3. 개정>

② 세관장은 제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입 규제물품)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반입금지 물품(별표1)은 반출·반입을 불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이 허용된다고 고시한 반출·반입 제한물품(별표2)

2. <2005.6.3 삭제>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약사법에 의한 규제물품

4. 기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물품

③ <2005.6.3 삭제>

제10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휴대품유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남북한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당해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3. 제9조에서 규정한 반·출입 규제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계기된 물품의 통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에 계기된 물품은 제11조에 의해 과세통관한다.
3.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반입금지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4. 제1항제3호에 계기된 물품 중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추천 또는 승인을 득한 후 면세 또는 과세 통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반출입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면세범위를 초과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으로서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의거 관세를 제외한 제세를 부과하고,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부과한다.

② <2005.5. 삭제>

제 4 장 출경절차

제12조(휴대반출신고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5.6.3. 개정>

1. 일시출경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이 여행시 사용하고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북한지역으로 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남북한왕래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3. 외국환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지급수단 등
4. 기타 관련법령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제13조(휴대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물품을 휴대하여 출경하였다가 입경하는 때에 제세를 면제받 고자 하는 남북한왕래자·승무원은 출경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받아 입경하는 때에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6.3. 개정>

② 제12조제2호의 물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운송수단의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2005.6.3. 개정>

③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출경하는 자는 외국환법령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휴대반출하여 북한지역에 지급하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6.3. 개정>

④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이 지급수단의 휴대반출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6.3. 개정>

제5장 승무원 휴대품 및 체류물품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승무원휴대품 인정범위) 남북한을 왕래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체류물품 인정범위) 남북한왕래자 중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에 대해서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5-3조,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 및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6.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왕래자 개인정보카드 및 카드인식시스템이 구축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반출·반입 금지물품

가.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3)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5) <2005.6.3 삭제>

나. 반출을 불허하는 물품

- 1) 반입을 불허하는 물품
-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 (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2) 검역대상물품
- 3)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 4)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남북왕래자 휴대품신고서				대한민국 세관	
이 신고서는 남북왕래자의 휴대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한 것이오니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1인이 전가족을 대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주민등록번호	-	
방문증번호 (여권번호)	직 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국 적	귀환일자	년 월 일	동반가족수	명	
선 (기) 명	출 발 지		여행 목적	<input type="checkbox"/> 관광 <input type="checkbox"/> 사업 <input type="checkbox"/> 공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행 기간
한국내주소 ☎()			-		
▶아래의 모든 질문을 읽고 모든 항목에 반드시 X표시 하십시오.				예 (Yes)	아니오 (No)
1. 당해 입경시 복측에서 구매/취득한 물품이 없습니까? * 연도별 5회이상 복측을 빈번히 왕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2. 아래에 해당하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하고 있습니까? * 2개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물품]

(해당품목에 X표시)

해 당 품 목	있음	없음	해 당 품 목	있음	없음
판매목적의 상용물품			양주1병		
전체 취득가액 총액이 US\$300상당 액을 초과한 물품(총액: 원)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		
품목당 농산물 5kg(자1kg), 합산재 3kg (인삼300g·국홍150g) 초과물품			동물·식물·과일류 등 검역대상물품		
국헌·국가안보·공안·풍속저해물품 (불온서적·CD·영화 등)			국제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식물 등		
화폐·지폐·유가증권 등의 모조·위조·변조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류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한도액 초과 외화 및 원화 등		
출경시 휴대반출신고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입시 입경하여 남한에서 사용하고 출경시 재반출할 물품		
세관에 보관하였다가 출경시 반출할 물품			기타		
이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 (서명)					

(뒷면)

[별지 제3호 서식]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 통관안내

○ 신고대상물품이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3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허용범위

○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물품을 포함하여 연도별 4회째까지로서, 1회당 전체취득가격 총액이 US \$300상당액 이내인 물품

- 다만, 왕래자가 연도별 5회이상 인정하는 때에도 이전에 휴대품신고서에 의하여 면세물품이 없음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면세횟수를 확인한 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북한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체류물품 등은 면세범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남북왕래자가 제3국에서 북한을 거쳐 인정하는 때에는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범위에 준합니다.

○ 특정물품(단, 만 19세미만인 경우 주류·담배는 제외)

- 주류 : 1병(1ℓ이하)

- 담배 : 킬런 200개비, 엽킬런 50개비, 기타담배 250g(1종류에 한함)

- 향수 : 2온스

- 농림축수산물·한약재(전체취득가격 총액 10만원 및 총량 50kg이내에 한함)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기타농산물 5kg이내, 잣 1kg, 쇠고기 10kg이내

·인삼 300g이내, 녹용·상황버섯 150g이내, 기타한약재 3kg이내

* 승무원의 남북왕래자의 휴대품인정범위를 준용한다.

◆ 유의사항

○ 휴대품 면세범위내의 물품은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고 반입이 허용됩니다.

○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등은 세관에서 보관하고 휴대품유치서를 교부해드리며,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 등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면세 또는 과세통관이 가능합니다.

- 북한산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를 부과하고, 외국산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를 포함한 제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하면 재 방부시 반송하실 수 있으나, 반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관세법에 따라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됩니다.

◆ 세관 기재사항

검사결과 :

검사자(직원코드) :

()

[유의사항]

1. 미화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였다가 재반입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대반출신고한 물품의 제조번호가 세관에 전산등록되었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반출입할 경우에는 2회차부터 세관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세관에 기 신고한 물품이 아닌 새로운 물품을 휴대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제조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출경시마다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반입하는 때에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o :

품 명	규 격	수량 또는 중량

위와 같이 반출함을 신고(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국 적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세관기재사항

반출확인자 : ○○세관 ○급 ○○○(서명)

II-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산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금강산 단체관광객,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금강산 관광안내원중 남한주민 또는 재외국민인 자(이하 각각 “단체관광객”, “승무원”, “안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

제3조(신청서류) ①단체관광객은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 및 금강산 관광신청서로 한다.

③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사업자를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증명서발급협의)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명

단을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다만, 수시방북증 소지자 및 초·중·고등학생 단체관광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삭 제>

제6조(증명서의 소지) 통일부장관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대표자를 지정하여 북한방문 승인 공문을 소지하게 하고,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외국민에 대한 증명서발급)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3조 내지 제6조의 방문증명서 발급 절차를 적용한다.

제3장 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절차

제8조(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한 증명서발급) 통일부장관은 승무원 및 안내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승무원 및 안내원의 북한방문 신고) 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승무원 및 안내원이 승인받은 방문기간 중에 북한을 방문할 때에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가 정하는 북한방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2005·1·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I-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

1. 적용범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관광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 승인을 받은 자(이하 "관광객"이라 한다)의 환전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여행경비

가. 여행경비 지급한도

관광객은 매회 관광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기본경비 : 미화 1,000불 상당 이내
- 2) 기타경비 : 국내에서 북한지역 관광사업자(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사업관련 남북협력사업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북한에 지급하는 경비

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관광객은 북한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관광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북한지역 관광사업자(동 사업자의 현지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관광선내의 환전영업자 설치 인가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관광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의 북한지역 관광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영업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관광객에 대한 환전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제3호에 의한 환전영업자가 관광객에 대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가 발행한 「북한지역관광경비지급 영수증」 원본에 "환전필" 날인을 하고 환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관광사업자의 관광비용 지급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관광비용을 북한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지역 관광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지급신고를 한 후 송금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광객은 관광선에서 북한으로의 왕래시 제2호 가. 1)의 기본경비(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를 제외하고는 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7. 기 타

기타 관광사업자의 경비지급 등 북한지역관광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0·8·14>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I-5.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1. 목 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 가. 회담대표
-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중 인적사항, 북한당국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병역법상의 허가서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부 칙 <2005·10·31>

이 훈령은 2005.12.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

번호	사진	기재사항
1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직 위)
		신 장(cm)
		주 소
2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직 위)
		신 장(cm)
		주 소
3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직 위)
		신 장(cm)
		주 소
4	(3.5cm×4.5cm)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직 위)
		신 장(cm)
		주 소

Ⅱ-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이산가족들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1세대 등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이산1세대"라 함은 이산가족 중 1953.7.27(휴전) 이전,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지역에서 남북(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한다.
3. "실향민"이라 함은 1953.7.27(휴전)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남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산1세대 및 실향민
2. 방북조력자 : 제1호의 방북을 돕기 위하여 동행 방북하고자 하는 가족
3. 긴급 가사 방북자 : 재북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병환중인 경우 및 기타 가사사정으로 인한 긴급한 방북사유가 있는 자
4. 북한방문증명서 소지자 :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의 목적으로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산가족 및 실향민

제4조(요건) 이 지침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족상봉, 고향방문, 성묘 등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2. 북한측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초청장 등)를 받은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 ①이산1세대 등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통일부장관은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시 남북교류협력시행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결격사유자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1·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I-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에 적용한다.

제3조(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의 특례)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별지)를 제출한 남한주민이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북한주민접촉신고의 특례) 남한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접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서 및 인적사항을 이산가족찾기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협의)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의 신고수리 또는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제출이 면제된 서류를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05·12·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II-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이산 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한 남북왕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된 이산가족, 기자, 지원인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에 의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일행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중 인적사항, 병역법상의 허가서는 면제한다. 신변안전보증서류는 북한에서 보내온 당국 명의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받음으로써 일행 전원에 대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남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①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북한주민이 직접 또는 남한측 초청자가 대리로 통일부장관에게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이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증명서 발급절차 등)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

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

부 칙 <2005·12·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 교역 및 수송

- Ⅲ-1.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Ⅲ-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 Ⅲ-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 Ⅲ-4.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 Ⅲ-5.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 Ⅲ-6.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에관한고시

Ⅲ-1.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한교역대상물품)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품목으로 하며, 동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분류목록표에 의한다.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 남북한교역대상물품중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소프트웨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 다.), 엽서·연하장
3.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5.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물품 중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을 하여 반입하는

농산물·임산물·수산물·공산품

② 물품을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거래형태와 대금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2. 외국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 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제4조(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반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및 지급과 거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그 사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하는 원·부자재 및 그 위탁가공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물품. 다만,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5.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

6.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제5조(반출·반입승인신청서등)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반출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6조(반출·반입승인 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에 의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부 칙<2005·10·31 >

이 고시는 2005.12.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	0102-10-1000	소(종우/젓소)
2	0102-10-2000	소(종우/육우)
3	0102-10-9000	소(종우/기타)
4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5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6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7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8	0202-20-0000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9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10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1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어깨살/뼈채 절단)
12	0203-29-0000	돼지고기(냉동/기타)
13	0207-12-0000	닭고기(미절단/냉동)
14	0207-14-1010	닭고기(다리/냉동)
15	0207-14-1020	닭고기(가슴/냉동)
16	0207-14-1030	닭고기(날개/냉동)
17	0207-14-1090	닭고기(기타/냉동)
18	0207-33-0000	오리고기(냉동/미절단)
19	0207-36-1000	오리고기(냉동/절단육)
20	0305-30-1000	진조어류피렛(명태포)
21	0305-59-3000	진명태(복어)
22	0306-14-3000	꽃게(냉동)에 한함. 매년 7.1-8.30 반입제한
23	0306-14-9000	기타게(냉동/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와 대게의 알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탈게 7cm이하 반입제한
24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열장·염수장)
25	0306-24-101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매년 7.1-8.30 반입제한
26	0306-24-1090	기타 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 / 붉은대게)에 한함. 붉은대게의 알컷 및 두홍갑장 9cm이하 반입제한. 탈게 7cm이하 반입제한
27	0307-29-1000	가리비(냉동)
28	0307-41-2000	오징어(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9	0307-49-1020	오징어(냉동)
30	0307-59-1020	낙지(냉동)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31	0402-10-1010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2	0402-10-1090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33	0402-10-9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34	0402-21-1000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5	0402-21-9000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6	0402-29-0000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37	0402-91-1000	무당연유
38	0402-91-9000	연유(무당연유 이외)
39	0402-99-1000	가당연유
40	0402-99-9000	연유(가당연유 이외)
41	0403-90-1000	버터밀크
42	0404-10-1010	유장분말
43	0404-10-1090	유장(유장분말 이외)
44	0405-10-0000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45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버터 이외)
46	0409-00-0000	천연꿀
47	0410-00-3000	로얄제리
48	0701-10-0000	감자(중자용)
49	0507-90-1110	녹용전지
50	0507-90-1190	녹용기타
51	0507-90-1200	녹각
52	0701-90-0000	감자(중자용 이외)
53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54	0703-20-1000	마늘/탈피한 것(신선·냉장)
55	0703-20-9000	마늘/기타(신선·냉장)
56	0709-60-0000	고추류(신선·냉장)
57	0710-80-2000	마늘(냉동)
58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
59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60	0712-20-0000	양파(건조)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61	0811-90-1000	냉동밥
62	0811-90-2000	냉동대추
63	0811-90-3000	냉동잣
64	0811-90-9090	냉동호두
65	0712-90-1000	마늘(건조)
66	0713-31-1000	녹두(건조/종자용)
67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68	0713-32-1000	팥(건조/종자용)
69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70	0714-20-1000	고구마(신선)
71	0714-20-2000	고구마(건조)
72	0714-20-3000	고구마(냉장)
73	0714-20-9000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74	0714-90-9090	서류(기타)
75	0802-31-0000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76	0802-32-0000	호두(탈각한 것)
77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78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79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80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81	0810-90-3000	대추(신선)
82	0813-40-2000	대추(건조)
83	0904-20-1000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84	0904-20-2000	고추(건조/분쇄한 것)
85	0910-10-0000	생강
86	1003-00-9010	겉보리
87	1003-00-9020	쌀보리
88	1003-00-9090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89	1005-10-0000	옥수수(종자용)
90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91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92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93	1006-10-0000	벼
94	1006-20-1000	메현미
95	1006-20-2000	찰현미
96	1006-30-1000	맷쌀
97	1006-30-2000	참쌀
98	1006-40-0000	쇄미
99	1007-00-1000	수수(종자용)
100	1008-10-0000	메밀
101	1008-90-0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102	1102-30-0000	쌀가루
103	1102-90-1000	보리가루
104	1102-90-9000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린·보리가루 이외)
105	1103-11-0000	밀(분쇄물 및 조분)
106	1103-19-2000	귀리(분쇄물 및 조분)
107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108	1103-19-3000	쌀(분쇄물 및 조분)
109	1103-19-1000	보리(분쇄물 및 조분)
110	1103-19-9000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111	1103-20-1000	밀(펠리트)
112	1103-20-2000	쌀(펠리트)
113	1103-20-3000	보리(펠리트)
114	1103-20-9000	곡물(기타/펠리트)
115	1104-19-2000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6	1104-12-0000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117	1104-19-1000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118	1104-19-9000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119	1104-29-2000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120	1104-22-0000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21	1104-23-0000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122	1104-29-1000	울무(압착·플레이크 이외)
123	1104-29-9000	곡물(압착·플레이크 이외)
124	1105-10-0000	감자(분, 조분과 분말)
125	1105-20-0000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126	1108-11-0000	밀 전분
127	1108-12-0000	옥수수 전분
128	1108-13-0000	감자 전분
129	1108-14-0000	매니옥 전분
130	1108-19-1000	고구마 전분
131	1108-19-9000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고구마 이외)
132	1108-20-0000	이눌린
133	1201-00-10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134	1201-00-9000	대두(기타)
135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136	1202-20-0000	낙화생(탈각)
137	1207-40-0000	참깨
138	1207-99-1000	들깨
139	1211-20-1100	수삼
140	1211-20-1210	백삼(본삼)
141	1211-20-1220	백삼(미삼)
142	1211-20-1240	백삼(잡삼)
143	1211-20-1310	홍삼(본삼)
144	1211-20-1320	홍삼(미삼)
145	1211-20-1330	홍삼(잡삼)
146	1211-20-2110	인삼분(백삼)
147	1211-20-2210	홍삼분
148	1211-20-2220	홍삼 타블렛·캡슐
149	1211-20-2290	홍삼분말(홍삼분·타블렛·캡슐 이외)
150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51	1211-20-9200	인삼종자
152	1211-20-9900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종자 이외)
153	1213-00-0000	곡물의 낱과 껍질(볏짚에 한함)
154	1214-90-1000	사료용 근채류
155	1214-90-9090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156	1302-19-1110	인삼정(백삼)
157	1302-19-1210	홍삼엑스
158	1302-19-1220	홍삼엑스분
159	1302-19-1290	기타 홍삼의 액즙과 엑스
16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161	1702-11-1000	유당
162	1702-19-1000	기타 유당
163	1702-90-1000	인조꿀
164	1806-90-229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5	1806-90-2999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리가루의 것은 제외)
166	1901-20-1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67	1901-20-2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168	1901-20-9000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69	1901-90-9091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170	1901-90-9092	기타 조제식료품(보리가루의 것)
171	1901-90-9099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172	1902-19-2000	당면
173	2001-90-9060	마늘(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
174	2008-11-9000	낙화생 조제품(피넛버터 이외)
175	2008-19-9000	견과류 낙화생 기타의 씨 류
176	2009-31-9000	감귤류 주스(브릭스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레몬·라임 이외)
177	2009-39-9000	감귤류 주스(기타/레몬, 라임 이외)
178	2103-90-1030	고추장
179	2103-90-9030	혼합조미료
180	2103-90-9040	메주

연번	품목번호 (HSK CODE)	품 명
181	2103-90-9090	혼합조미·조제품 기타
182	2106-90-3019	인삼류(기타 백삼 제품류)
183	2106-90-3021	홍삼차
184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185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
186	3301-90-4520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187	3505-10-3000	배소전분
188	3505-10-40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189	3505-10-5000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190	3505-10-9000	기타 변성전분(기타)
191	3505-20-1000	전분 글루
192	3505-20-2000	텍스트린 글루
193	3505-20-9000	기타 글루
194	5004-00-0000	건사
195	9613-1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
196	9613-20-0000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의 것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

[별지 1호 서식]

북한물품반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15일

① 반입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⑤ 송 화 인
(인)		⑥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 업 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금 액
③ 원 산 지	결 제 기 간	
④ 선 적 항	⑦ 가격조건	
⑧ HS부호	⑨ 품 목 및 규 격	⑩ 단위 및 수량
⑪ 단 가		
⑫ 금 액		
⑬ 승 인 조 건		
⑭ 승인유효기간		
⑮ 승 인 번 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뒷면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32313-05311년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80g/m²

- 첨부서류 : 1. 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입대행계약서(반입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②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별지 2호 서식]

대북한 반출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15일

① 반출자(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⑥ 수취인
(인)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추심어음() 송금환() 기 타()
③ 원산지	금 액
④ 선적항	결제기간
⑤ 도착항	⑧ 가격조건
⑨ HS부호 ⑩ 품명 및 규격 ⑪ 단위 및 수량 ⑫ 단가 ⑬ 금액	
⑭ 승인 조건	
⑮ 승인유효기간	
⑯ 승인 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통 일 부 장 관	

32313-054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80g/m²

- 첨부서류 : 1.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 포함)
2. 반출대행계약서 (공급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3.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 (해당물품에 한함)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 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소정양식)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별지 3호 서식]

반출입승인신청서

(용)

처리기간 15일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전화) 무역업 신고번호	⑦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인)	⑧ 결제조건
② 위탁자(상호·주소·성명·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인)	금 액
③ 송화인	결제기간
	⑨ 가격조건
	⑩ 결제조건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송금환() 추심어음() 기 타()
④ 원산지	금 액
⑤ 선적항	결제기간
⑥ 도착항	⑪ 가격조건
반출물품의 명세	
⑫ HS부호 ⑬ 품명 및 규격 ⑭ 단위 및 수량 ⑮ 단가 ⑯ 금액	
반입물품의 명세	
⑰ HS부호 ⑱ 품명 및 규격 ⑲ 단위 및 수량 ⑳ 단가 ㉑ 금액	
⑳ 승인 조건	
㉒ 승인유효기간	
반출 : 반입 :	
㉓ 승인 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첨부서류 : 뒷면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32313-05511민
99.6.3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70g/m²

- 첨부서류 : 1. 반출·반입계약서
(반출·반입을 한 계약서에 작성하되, 별도의 계약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계약을 연계시키는 의정서(protocol)를 첨부)
2. 이행보증 또는 환급보증(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① 북한물품반출입관련내역서(소정양식)
②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 사본

[별지 4호 서식]

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상호·주소·무·역·업·성명·전화) 신고번호	② 변경전 승인일자
	③ 변경전 승인번호
	④ 승인사후관리은행명
	⑤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변 경 후
⑥ 승 인 조 건	
⑦ 승인유효기간	
⑧ 승 인 번 호	
<p>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p> <p>첨부서류: 하단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등 일 부 장 관</p>	

32313-05611민
99.6.30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

- 첨부서류: 1. 변경계약서
2. 변경승인신청 사유서

(#1) 북한물품반입신청서 첨부서류

북한물품반입관련내역서

구 분	내 역		비 고
반 입 경 로			○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관매방법			○ 해당시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 반입	- ○○년:	천\$
		- ○○년:	천\$
		- ○○년:	천\$
		- ○○년:	천\$
		- ○○년:	천\$
	○ 반출	- ○○년:	천\$
		- ○○년:	천\$
		- ○○년:	천\$
		- ○○년:	천\$
		- ○○년:	천\$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 성 명	○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승인자는 승인 내역 기재
○ 유효기간	○ 신고수리번호		
연 락 처 (담당자)	○ 성 명	○ 전 화	
	○ FAX	○ 이동전화	
	○ E-mail		
기타 참고사항			

(#2) 북한물품반출신청서 첨부서류

대북한물품반출관련내역서

구 분	내 역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반출품 사용처			
신청경위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 성 명	○ 신고수리일시	* 북한주민접촉 승인자는 승인 내역 기재
	○ 유효기간	○ 신고수리번호	
	○ 목 적		
연 락 처 (담당자)	○ 성 명	○ 전 화	
	○ FAX	○ 이동전화	
	○ E-mail		
기타 참고사항			

Ⅲ-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관세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에 의거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 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 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 등 지정된 장치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3-1조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탁가공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 의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국세 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

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물품으로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 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고무인을 반출입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준용)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면제대상 반출입물품의 통관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의 일반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장은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원산지 확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간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①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한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간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통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발급기관장에게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을 요구받은 발급기관장은 15일 이내에 당해물품의 원산지 확인자료 및 반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확인에 장기간 소요 등으로 기간내에 확인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고예정일자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보고일자는 당초 보고시한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관세청장은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 관계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으로 하여금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가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8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여행자휴대품 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 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입자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물품은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 4 장 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②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세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 및 서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의 인영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중 1부를 통일부장관을 경유하여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기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원산지확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원산지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청인을 날인하고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2부(제출용 1부, 신청인 보관용 1부)를 발급하며, 각각의 증명서 표면에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

고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기 발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과 재발급 표시를 다음 각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기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기발급한 발급일자과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예시 : 재발급 2003.10.10)

⑦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은 최초 발급일)부터 1년 으로 한다.

⑧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타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장이외 타 발급기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원산지확인기준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

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제23조(원산지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남한 또는 북한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원산지확인 세부기준 운영) 이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확인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남북사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6조(조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세법칙 등의 조사를 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27조(반출입 통계) ①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보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관세법칙 등의 조사의뢰(즉시)
2.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03-31호, 2003. 9.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재 발 급 신 청 서

- 발급일자 :
- 발급번호 :
- 재발급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20조 제5항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 : 1. 기발급 신청인보관용 1부(제출이 가능한 경우)
2. 기발급 신청시 원산지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200

신청인 : (인)

Ⅲ-3.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2. “부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운행·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박운항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선박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4. 선박보험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5. 선원명부 1부

6.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정부 및 대한적십자사 물자를 운송하는 경우 및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운항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기운항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운항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항계획서 1부
2.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계획서에는 운항목적, 운항일정, 비행항로,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차량운행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 1부
2.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구간, 통신체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운행승인의 신청)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서에는 운행목적, 운행일정, 운행노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및 제6조의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변경승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승인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자료 요구)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 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행승인기준) ①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신청서의 제출서류 등이 영 제43조의 운행의 승인기준 및 다음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기관과 체결되어야 할 것
2.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운행승인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
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11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이 운행승인신청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선박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항공기는 별지 제8호서식, 철도차량은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운행승인서를 발급한다.

제12조(운행승인유효기간) ①운행승인유효기간은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이내에서 정한다.

1. 정기운행 : 2년
2. 부정기운행 : 1년

②운행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당해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행결과와 보고)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의 운행승인을 받은 자가 운행한 때에는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7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익월 7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운행승인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94-1호)
2.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통일부고시 제2001-5호)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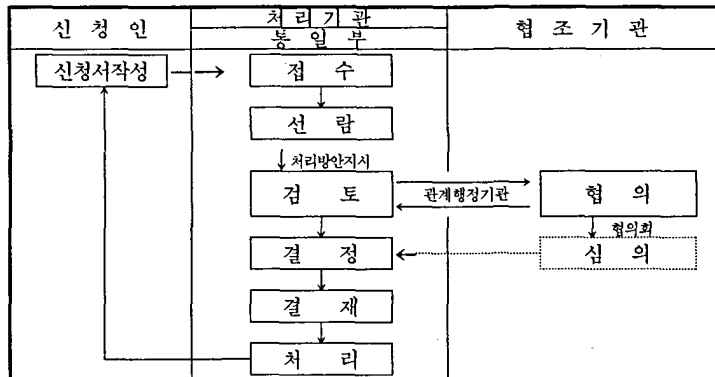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10일	
선박운항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기간				
운항노선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운항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 관계법령에 의한 해상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또는 어획허가증 사본 1부 4. 남북교류협력증서(P&I 증명서) 사본 1부 5. 선원명부 1부 6.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한다)			수수료
지불하는 경우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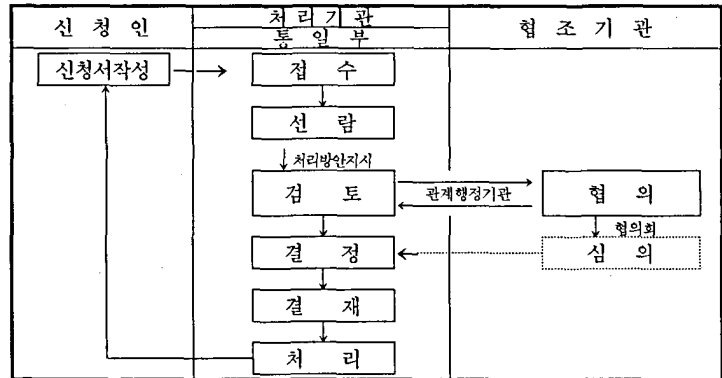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10일	
항공기운항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운항기준				
운항목적				
운항기간				
운항노선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운항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운항계획서 1부 2. 항공기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항공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항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항합의서 등 운항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지불하는 경우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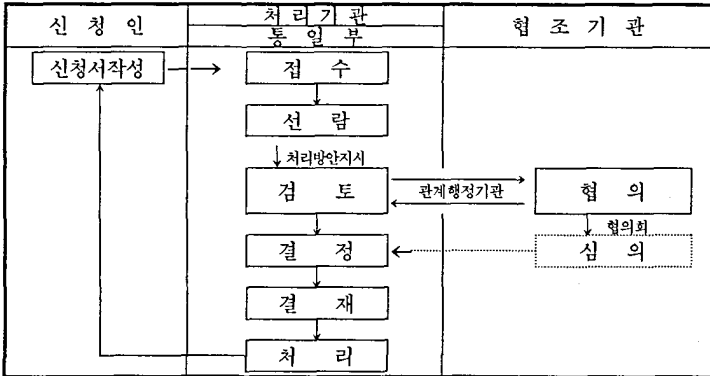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5일
철도차량운행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량명칭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구간		
	운행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행계획서 1부 2. 철도차량 제원내역서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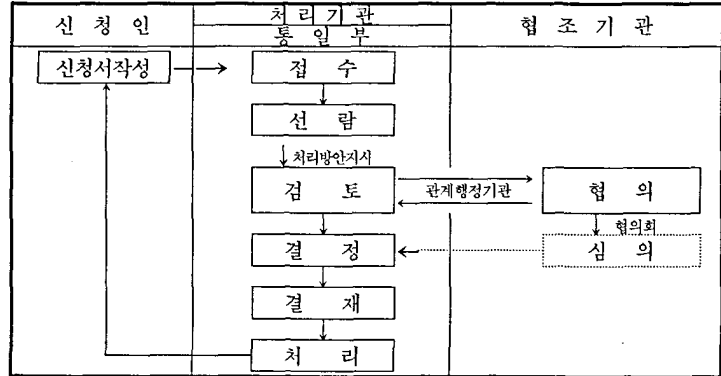
(앞 면)

		처리기간	5일
자동차운행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종(등록번호)		
	운행목적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 <input type="checkbox"/> 여객운송 <input type="checkbox"/> 기타()	
	운행기간		
	운행노선		
	운행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기운행 <input type="checkbox"/> 부정기운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운행계획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승무원명부 1부 4. 관계법령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허가·등록증 사본 1부 5. 북한의 운행허가서 또는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1부(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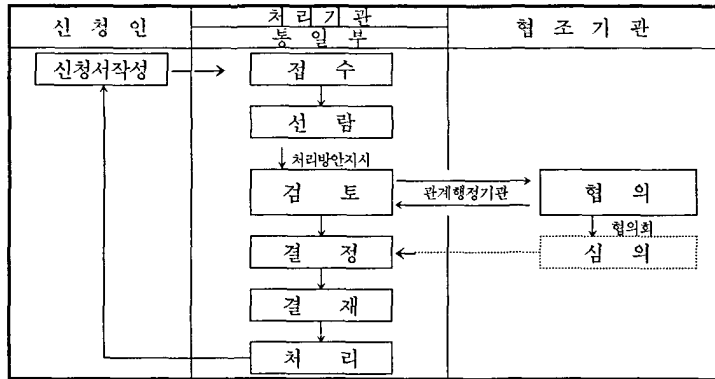
(앞 면)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변경전 승인번호		변경전 승인일자		
변경내용 (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승인번호		선박정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 승인조건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 회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정기운항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위해 용선하는 외국적선은 남북간 운항사업에 한하여 운항하여야 합니다.			
3. 남북한간 및 제3국간 연계운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선박운항후 그 결과를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선박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 서식]

승인번호		선박부정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선명(선적 총톤수)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 승인조건			
1. 승인가내에 운항하지 않은 경우 본 승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및승인가내에관한고시 제3조의 서류를 허위 기재한 경우 승인을 취소합니다.			
4. 선박운항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선박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장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8호 서식]

승인번호	항공기운항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운항기종				
운항목적				
운항노선				
운항승인 유효기간				
운항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항공기의 운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9호 서식]

승인번호	철도차량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량명칭				
운행목적				
운행구간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구분	정기	월 회	부정기	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철도차량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0호 서식]

승인번호	자동차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차종(등록번호)			
운행목적			
운행노선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구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자동차의 운행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1호 서식]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승인번호	상호(명칭)	수송장비 종류	수송장비 명칭	운행일	운행노선	적재량 (여객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Ⅲ-4.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확인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 및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 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이하“남북원산지합의서”이라 한다)에 따라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양식, 인장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북한에 즉시 통보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산지 판정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8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물품 또는 제5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표시

2. 제5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한국산으로 표시

3.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본조신설 2005·3·23)

제9조(원산지 확인기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한은 관세청으로 하며, 북한은 민경련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서 면제) 남북한 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범위는 남북원산지합의서 제7조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 면제에 관해 남북한간 합의하는 바에 따르되, 구체적인 범위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 ①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한다.

1.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국내에서 공급한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2.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국내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③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원산지가 북한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Made in DPRK(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3)

제12조(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통일부장관은 북한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3.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 ② 실무협의회는 3~5명 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대표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5·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년 12월 31일까지 세관에 반입신고된 물
량에 한하여 북한의 민경련 이외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
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이내로서 진
의여부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s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Other information)		상기 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확인 인 Stamp ○		발급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발급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 이 양식은 남북교역물품용임.

210mm×297mm

* 복측이 제시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증명서

번호 _____
 날 자 주체 년 월 일
 (2004)

판 매 자 _____
 구 매 자 _____
 품 명 _____
 수 량 / 중 량 _____
 포 장 / 표 식 _____
 제 품 생 산 자 _____
 제 품 생 산 장 소 _____
 수 송 수 단 _____

상기 제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및 가공됨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발급장소 :

Ⅲ-5.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통관에관한고시

제1장 총 칙

제1-0-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관한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한 물품(이하 “반입물품”이라 한다)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장치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통관역”이라 함은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에 의거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분계역중에서 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 관세청장이 철도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당해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역을 말한다.
4. “통관장”이라 함은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에 의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중에서 법 제148조 제4항에 의거 세관장이 도로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반출입물품 및 당해차량에 대한 세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5. “관세통로”라 함은 공업지구와 연결되고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중에서 법 제148조 제2항에 의거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6. “통행차량”이라 함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차량 및 도로차량을 말한다.
7.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써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8. “도로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도로를 통해 인원 또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승용차·버스·화물차·휠어운반차·탱크로리 등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

제1-0-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남북통관에 관한 다른 고시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업지구 반출입물품 통관

제1절 일반원칙

제2-1-1조(관세 부과세)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산인 경우

또는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구생산물품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공업지구와 남한간에 인원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2조(내국세 과세)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제3항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1-3조(관세등 환급)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지구로 반출한 물품(이하 "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보아 당해 물품 또는 당해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반출되는 물품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일부를 공업지구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북측에 판매하였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공업지구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환급신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물품반출입 신고

제2-2-1조(반출·반입신고)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4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 제2항 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입 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2조(신고의 시기) ①공업지구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통행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2-2-3조(연속공급물품 반출신고) 남측에서 전선이나 배관을 통해 공업지구로 연속적으로 반출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10일 이내에 당해 월 공급예정 수량을 반출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를 하고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을 정정(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서식 사용)하여야 한다.

1. 전기
2. 가스

3. 용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제2-2-4조(신고세관) ①공업지구에서 통행차량으로 운송된 물품은 도라산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접경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도착전신고는 당해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반출물품은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신고시 제출서류) ①제2-2-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화물운송장부분
4. 반입승인서(통일부장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반입승인대상에 한함)
5.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원산지증명 관련서류
7. 기타 세관장이 반입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2-2-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신고서(수출신고서서식 사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품장
 2. 포장명세서
 3. 반출승인서(통일부장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반출승인대상에 한하며 전락물자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함)
 4. 법 제226의 규정에 의한 반출요건확인 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세관장이 반출물품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 거래내용, 운송방법 등에 비추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6조(신고인)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 및 또는 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절 검사 및 심사

제2-3-1조(반입신고 물품의 검사) ①세관장은 공업지구에서 위탁가공된 반입물품은 수입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 이외의 물품은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제출된 포장

명세서에 포장(box)별, 품명, 규격(모델), 수량, 중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보완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2-3-2조(반입신고전 물품검사) ①세관장은 반입물품의 적하목록 등을 심사하여 안보위해물품·마약류·품명상이·수하인 또는 통지처 불분명·밀반입 등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반입신고전에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제1항에 규정의 의한 검사대상 선별, 검사실시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3조(반출신고 물품의 검사) ①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물품 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물품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전에 대하여는 현품일치 여부 및 타 물품 은닉여부 등에 대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반출신고된 물품이 접경지에서 검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경지 세관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접경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환급·밀반출 등 부정무역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2-3-4조(물품의 검사장소) ①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법 제 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 다만 세관장이 통행차량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②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접경지세관에서 반출물품을 검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3-5조(검사시 입회) ①세관장은 물품검사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시간·검사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이 검사입회를 통보한 검사일시에 신고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신고인은 검사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주의할 사항을 세관검사공무원에게 검사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6조(통관심사) ①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2-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요건 구비 여부

4. 원산지확인 관련서류 구비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5. 반입승인서 구비여부

6. 기타 반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②반출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2-5조 제2항에 규정한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 기재 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요건 구비 여부

4.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5. 반출승인서 구비여부

6. 기타 반출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

제2-3-7조(신고필증의 교부) ①세관장은 반출입신고가 법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출입신고권이 전자서류에 의해 신고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이 관세사인 경우에는 신고수리필 고무인과 관세사 인장을 날인한 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절 반송 및 반출 기간

제2-4-1조(반송신고 요건) 공업지구에서 반입된 물품 또는 외국 물품을 공업지구로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 후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2조(반출기간) 반출 또는 반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업지구로 운행하는 통행차량에 적재하여 관세통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적재기간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3조(휴대반출확인) 반출(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휴대 반출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공무원에게 반출(반송)신고필증의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원산지

제1절 원산지 확인기준

제3-1-1조(원산지 확인기준) ①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 지정한 품목
-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경우
-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경우
-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경우
-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경우

-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경우
-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 (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경우

제3-1-2조(원산지 결정의 특례)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와 포장용품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남한 또는 북한으로 본다.

-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남한 또는 북한의 제작자인 경우
- 2.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가 남한 또는 북한인 경우. 다만, 포장용품과 내용물품이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서로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3조(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전시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2-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1-4조(원산지 세부기준 운영) 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산지 확인

제3-2-1조(원산지신고서 등 제출) 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북한산 또는 남한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입신고서 개성공업지구생산물품원산지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사용) 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2조(원산지신고서 제출면제) ①제3-2-1조 및 제3-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

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다만, 한 송하인이 같은 수하인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②제3-3-3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3조(원산지신고서 심사) ①세관장은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 제3-1-1조 내지 제3-1-4조 충족 여부 및 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북한산 또는 남한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는 원산지표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신고수리전 반출) ①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신청 및 담보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2-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제3-1-1조 내지 제3-1-4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

2.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②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표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1-1조 내지 제3-1-4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Made in DPRK (Gaeseong) 또는 북한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2. 제3-1-1조 내지 제3-1-4조 규정의 원산지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남한인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은 방법

3. 제3-1-1조 내지 제3-1-4조 규정의 원산지 확인기준에 의해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에는 제3국산으로 표시

③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절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제3-3-1조(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물품 중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하여 제3-3-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하 "일시반출입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남한산으로 간주하며, 동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표시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1. 공업지구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등록자본 중 남한의 소유지분이 60%이상인 경우

2. 공업지구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전체 직접재료비 중 남한산 직접재료비의 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제3-3-2조(일시반출입물품의 반출) ①공업지구로 물품을 일시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제3-3-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신고서의 신고인기재란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임과 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작업예정기간"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반출입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제3-3-3조(일시반출입물품의 반입) ①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제3-3-1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서에 “개성공업지구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별지 제2호서식)와 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반입신고서 및 원산지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제3-3-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일시반출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5조 제2항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제3-3-4조(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 ①제3-2-1조 및 제3-3-3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신고서작성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3-2-1조, 제3-3-3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업지구 반출입 화물의 관리

제1절 적하목록 제출 및 화물관리

제4-1-1조(적하목록의 제출) ①통행차량이 입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

기 1시간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접경지세관 도착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행차량이 출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4-1-2조(적하목록 제출의무자) ①제4-1-1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은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통관역장(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그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 접경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혼재화물의 경우에는 법 제2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을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3조(적하목록 심사) 화물관리담당 세관공무원이 적하목록을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적하목록의 자료의 취합완료 여부
2. 적하목록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3.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 여부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4조(반입물품 하차) ①반입물품을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하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접경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하차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하목록에 하차장소(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보세구역외장치를 말한다)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차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1-5조(보세구역 장치) ①하차신고를 한 때에는 입경일 익일 까지 접경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하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다

제4-1-6조(반입물품의 보세구역관리)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 (이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통행차량에 의해 운송된 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적재상태 장치포함)한 때에는 장치 즉시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인)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물품을 출고하여야 하며, 출고전에 접경지세관장에게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1-7조(반출물품 보세구역관리) ①접경지 보세구역운영인은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에는 화물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보세구역장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지역에서 접경지세

관으로 보세운송된 반송물품에 대한 보세운송도착보고는 보세구역장치신고로 갈음한다.

③접경지보세구역운영인은 장치된 반출물품의 반출(반송)신고필증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세구역출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보세운송

제4-2-1조(보세운송 승인) ①반입물품을 개항·보세구역·법 제 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세관관서·통관역·통관장 또는 통관우체국간의 장소로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2조(보세운송물품 검사) 접경지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2-3조(보세운송 승인대상) 접경지세관장은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 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을 승인할 수 있다.

1. 수출하기 위하여 공·항만으로 운송되는 물품
2. 보세공장·보세판매장·보세건설장·보세전시장으로 운송되는 물품
3.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요하는 물품
4. 소방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5. 기타 접경지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통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4-2-4조(담보제공) 세관장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에 대해 관세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
2.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하는 화주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 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3.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을 신청한 물품인 경우

제4-2-5조(철도차량 운송물품) 철도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철도화물을 통관역에서 다른 화차에 환적하지 아니하고 통관역 이남 철도역까지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컨테이너 확인

제4-3-1조(컨테이너 운송원칙) 공업지구로의 반출입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유개차 등 포함)로 운송하여야 한다.

1. 운송물자의 크기나 무게가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한 경우
2. 운송물자의 성질상 컨테이너 운송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3-2조(입경 컨테이너 확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로부터 운송된 컨테이너에 대해 공업지구세관에서 발급한 반출관련 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대조하고 봉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접경지세관장은 운송된 컨테이너가 개장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업지구세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세관장은 제4-3-3조 및 제1항에 규정된 반출입사항을 컨테이너봉인및확인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3-3조(출경 컨테이너 확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②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③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제5장 공업지구 통행차량관리

제1절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제5-1-1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①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공업지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첨부하여 통행차량등록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사용)를 접경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업지구세관에 등록된 도로차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5-1-2조(통행차량증명서 교부) ①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운행지역 등을 심사하여 유효기간 2년 범위이내의 통행차량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사용)을 발급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개인 및 차량 등에 대하여 통행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접경지세관장은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통행차량등록명부(별지 제8호 서식 사용)를 남북간에 합의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공업지구세관에 통보한다.

제5-1-3조(출입확인) ①도로차량으로 공업지구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시마다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통행차량증명서 제시받은 세관공무원은 입출경확인란(별지 제7-1호 서식 사용)에 입경·출경 심사인(별표 2)을 날인하여 1회 출입 도로차량은 통행차량증명서를 회수하고, 상시 출입 도로차량은 심사 후에 입경·출경 심사인을 날인하여 통행차량증명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③공업지구를 상시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차량의 입출경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차량을 출입확인한 세관공무원은 도로차량 출입경사실을 통행차량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5-1-4조(변경, 분실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통행차량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여된 조건의 변경, 분실,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행차량 증명서(변경, 재발급,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사용)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증명서가 재발급되는 때에 최초 증명서는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제2절 통행차량의 도착 및 출발보고

제5-2-1조(도착보고 및 제출서류) ①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통행차량이 공업지구로부터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접경지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통행차량도착보고(별지 제10호 서식 사용)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는 통행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용품목록(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2. 여객명부(별지 제12호 서식 사용)
3. 승무원 명부(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4. 승무원 휴대품 목록(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5. 반입물품적하목록(별지 제4호 서식 사용)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

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종이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제5-2-2조(출발보고 및 허가) ①통행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관역장 및 도로차량 운전자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차량이나 도로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접경지세관장에게 반출물품적하목록(별지 제5호 서식 사용)을 첨부하여 통행차량출발보고(별지 제9호 서식 사용)를 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접경지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발허가를 받아 철도차량이 출발한 때에는 출발사실을 통행차량관리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5-2-3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보고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정정·취소 신청(별지 제14호 서식 사용)하여야 한다.

제5-2-4조(통행차량의 운행) ①공업지구를 운행하는 통행차량은 법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도로차량은 통행차량증명서에 기재된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5-2-5조(차량의 검사) ①접경지세관장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 등을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관세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②도로차량에 대한 검사는 통관장에 설치된 세관차량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차량검사장에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통로 또는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2-6조(운송목적 이외의 차량 통관) 도로차량 이외의 목적으로 남한 또는 공업지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 또는 반출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0-1조(범칙조사)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법령 등의 위반혐의로 범칙 조사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조상표를 부착한 경우
2.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세관제출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제출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반출입한 때
4. 원산지관련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때
6. 통행차량 출발중지·진행정지 명령 또는 차량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7.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0-2조(준용규정) ①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휴대물품통관에관한고시 및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 등을 준

용한다.

②공업지구이외의 지역에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제4-3-2조 및 제4-3-3조, 제5-1-1조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3조(접경지세관장에 대한 위임사무) 접경지세관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통관장 및 통관역, 보세구역 등에 대한 장비·인력 등의 배치·운영 및 통행차량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고시에서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기 전까지 도라산지역은 서울세관장, 고성지역은 속초출장소장으로 한다.

②제2-3-3조 제3항의 규정은 접경지세관에 반출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 설치될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6.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에관한고시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에관한고시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내지 제153조의 규정 등에 준하여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이하 '통행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통행차량"이라 함은 관세법 제148조 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동차 및 철도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철도차량"이라 함은 남북간 철로를 통해 왕래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화차 및 객차 등을 포함한다.
3. "철도차량의 차량"이라 함은 접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이외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4. "관세통로"라 함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남북접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5. "통관역(또는 분계역)"이라 함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역을 말한다.
6.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7. "통관장"이라 함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8. "통행차량 증명서"라 함은 남북간 접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행하는 입출국 증명서를 말한다.
9. "출입장소"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10. "출경"이라 함은 남측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북한으로 나가거나 북측에서 입경한 차량이 다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1. "입경"이라 함은 북측에서 분계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거나 남측에서 출경한 차량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2. 기타 본 고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남북한 접경 운송수단의 출입

제1절 통행차량의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제2-1조(통행차량의 등록) ①관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준하여 남북접경을 운송수단(철도차량 제외)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남북간통행

차량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이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 차량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수송장비 운송승인서"에 의한 업체 및 차량에 한한다.

②세관장은 차량등록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심의하고 필요시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용품 및 밀수 은닉장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의 고유번호 등을 관세청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통행차량 증명서의 발급) ①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송수단중 철도차량이외의 차량으로 접경지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교부받아 출입시마다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출입장소까지만 왕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전자의 인적사항
2. 차종, 차형, 생산연도, 배기량 및 차량등록번호
3. 운행지역, 운행목적 및 운행구간
4. 유효기간
5. 기타 남북간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②등록된 차량의 운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리운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통행차량 증명서의 종류 및 확인) ①세관장은 통행차량

의 출입목적, 운행기간 등 요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단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빈번히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발급하는 복수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단수증명서는 관할 세관장이 최초 입·출경시 발급하고 출·입경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복수증명서를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출경 및 입경심사를 하고 아래와 같이 심사인을 날인하여 확인한다.
출경심사인, 입경심사인 생략

제2-4조(등록차량 사전통보) 세관장은 차량등록 및 출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통행차량등록명부를 북한측 세관에 사전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제2-5조(등록의 취소) ①세관장은 통행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통행차량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지정한 운행통로, 운행지역 또는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2. 통행차량이 밀반출입 물품의 운반에 사용된 경우
3. 통행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측 관할구역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세관장은 통행차량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제2-4조 규정에 준하여 통보한다.

제2-6조(증명서 변경, 분실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통행차량증

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여된 조건의 변경, 분실,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분실된 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최초 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절 통행차량의 도착 및 출발보고

제2-7조(도착·출발보고 및 제출서류) ①통행차량의 운전자(이하 '소속회사 업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통관역장은 통행차량이 통관장 또는 통관역에 도착 또는 출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남북접경차량 도착·출발관련 전자문서 서식 작성요령]에 따라 "남북간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용품목록(서식 제7호)
2. 승객명부(서식 제8호)
3. 승무원 명부(서식 제9호)
4. 승무원 휴대품 목록(서식 제10호)
5. 적재물품목록(서식 제11호), 단 철도차량에 한한다.
6. 기타 복측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물품반출증, 출발허가서 등 관련서류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서 정한 여객명부·적재물품목록 등을 도착

전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역장 또는 출입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서류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발허가) 통관역장 및 차량운전자는 열차나 차량이 통관역 또는 통관장을 출발하기 전까지 제2-7조 규정에 의한 '남북간통행차량출발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통과차량의 보고 및 확인) ①남북간 통행차량으로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하여 승무원 및 승객의 승하차 또는 화물의 하역이나 적재 없이 단순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의한 도착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출발허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과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0조(도착 및 출발보고의 정정·취소) 통관역장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착보고 또는 출발허가 신청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착보고 수리 또는 출발허가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서류로 정정·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차량 검사 및 휴대품 통관

제3-1조(세관장의 확인 및 검사) ①남북간 통행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된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도착 및 출발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착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하며, 밀반출·입 또는 부정무역 방지를 위하여 출입·경 차량과 적재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화물 및 휴대품 통관) ①통행차량의 승무원과 승객의 휴대품통관 및 일시수출입차량통관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 통관에관한고시' 및 '남북한왕래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등에 따른다.

②기타 반출입되는 화물처리에 관한 하선·적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의 절차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및 '보세운송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3-3조(운행지역의 제한) 남북간 통행차량의 운행지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접경세관장의 위임사무) 세관장은 통관장, 세관검사장 및 감시초소의 장비, 인력의 배치 운용 등 본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이 고시에 규정하지 않은 통행차량의 도착출발에 관한 절차는 '외국무역선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관한고시'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3.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V. 협력 사업

- IV-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 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 IV-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IV-5.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

IV-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채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

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1 중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
 -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는 행위
 -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사업실적 인정범위) 법 제16조제1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31〉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

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영 제31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제7조(수시방문증명서 발급) ①통일부장관은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98·5·12, 2005.10.31>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 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문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삭제('04.7.8)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방문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3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4.7.8, 2005.10.31>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삭 제<2005.10.31>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 제1항 제5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 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자의 경우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기업창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9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환경관리 계획
 - 바.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마. 회사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재조달 방법
 - 바. 당사자의 임무
 -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카. 효력발생 조건
 -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 나.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2005.10.31>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

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5.10.31>

제11조(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2005.10.31>

제12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 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 일로부터 20일 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승인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신설 99·5·28>

1. 제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총 투자액이 미화 1,000만불 이하일 경우<2005.10.31>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
3. 남북한 당국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일 경우

부 칙<2005.10.31>

이 규정은 2005.12.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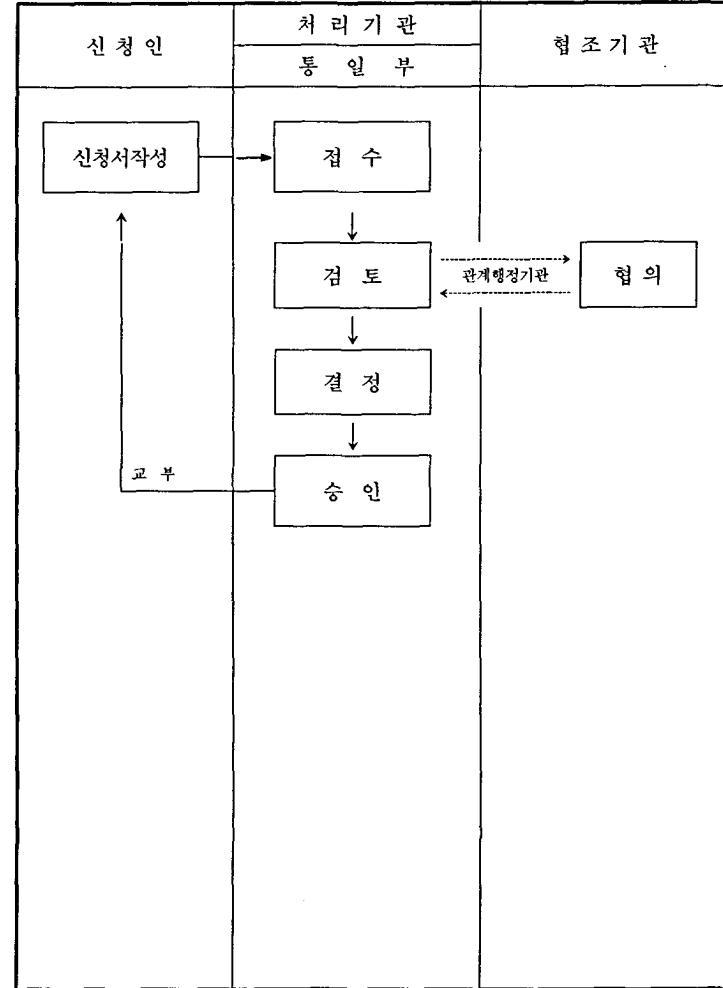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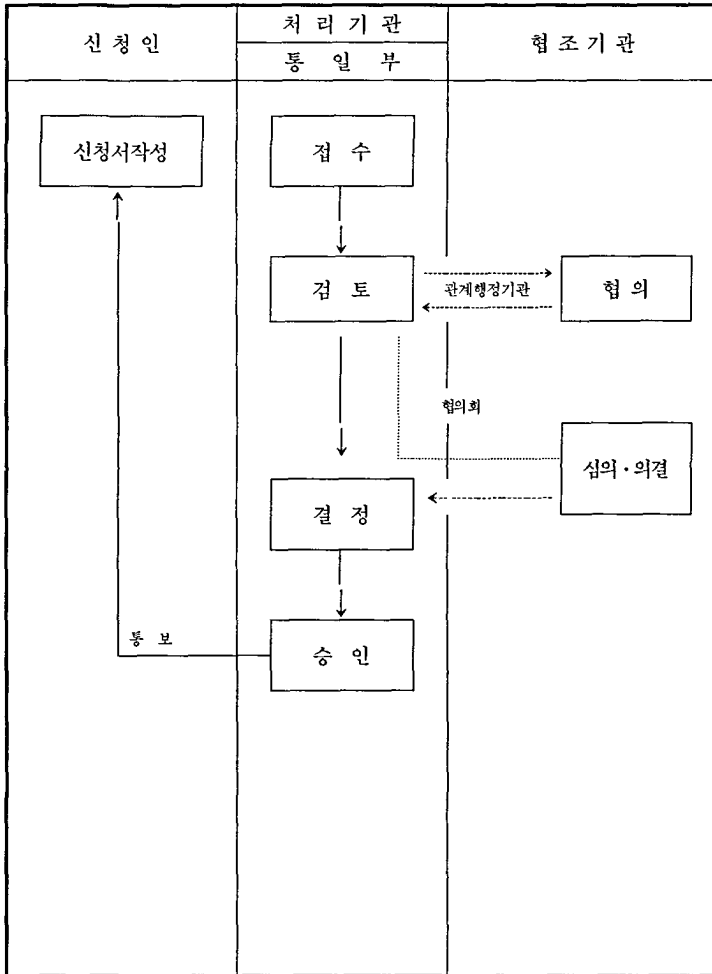
		처리기간	20일
①상 호 (법인명)		②업 종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협 력 사 업 자 승인신청업종			
<p>남부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능력, 예상 투자규모·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의향서 사본 1부 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사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복규)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3조(사무소의 설치승인) ①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5조(승인 처리절차) ①통일부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명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사무소의 폐지) ①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사무소 설치 보고등) ①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사무소의 명칭 또는 위치등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내용(변경사유 증빙서류 사본 첨부)
7.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 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통일부장관은 사무소 설치 승인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0.31>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 ④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2005·10·31>

이 고시는 2005. 12.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 호	②설립년월일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사무소설치내역	⑥업 종		
	⑦설치목적		
	⑧사무소명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소재지		
	⑫업무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⑬주재원수 본사파견 : 명 현지고용 : 명		
⑭영위업종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첨부서류> :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경비조달계획서 및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수수료
			없음

11313-03011 인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70g/㎡

[별지 제2호서식]

사무소설치승인증

①상 호	②대표자성명
③업 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소 설치를 승인합니다.

⑥설치목적	⑦승인번호
⑧사무소명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⑩소재지	
⑪주재원수 본사파견 : 현지고용 :	⑫활동내용
⑬상주기간 (년월일까지)	⑭승인일 년 월 일
⑮승인조건	

년 월 일

통일부장관

11313-0311 인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120g/㎡

IV-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5조(적용규정)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6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등 자금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7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8조(의견요청) 제6조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투자금의 송금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금 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11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 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 후 2월이내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대북투자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자의 승인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절 북한지사

제14조(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15조(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

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 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20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업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북한지사내 관한 사후관리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북한지사의 폐지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을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년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 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

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 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매출실적(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북한 현지법인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

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부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

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25조(권한의 위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1995·6·2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사업자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신청서
2.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3. 협력사업 상대자의 의향서 사본
4.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새로 추가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자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년의 기간내에서 수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3. 향후 3년간의 방북예정서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방문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3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
-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원본

④<삭제>

제7조(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2. 영화, 공연물, 출판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 3. 제10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사업의 승인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자에게 그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 기대효과

-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 (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력사업의 명칭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양도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처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의 신청과 그 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사업
2. 긴급을 요하는 협력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동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부 칙 <2005·12·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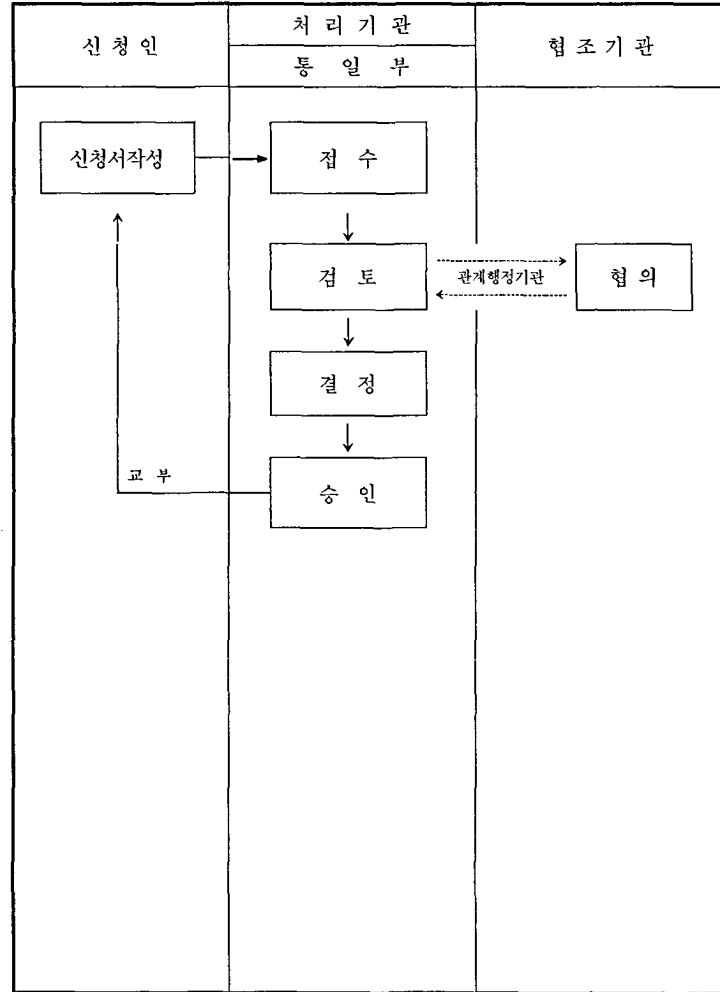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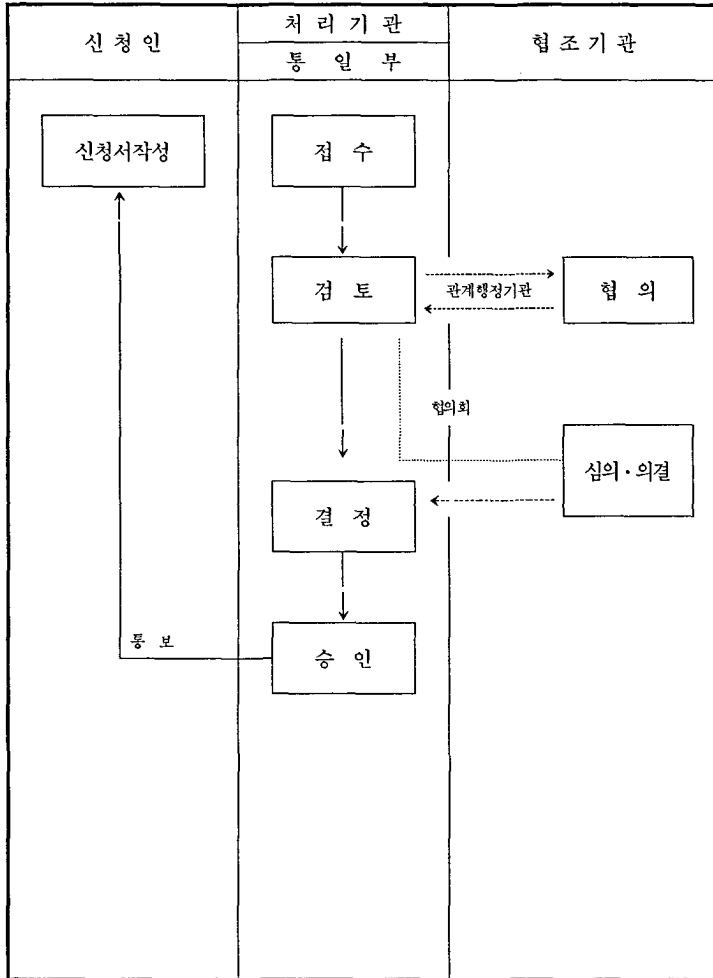
	처리기간	20일	
①상 호 (법인명)		②업 종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 민 등 록 번 호	
⑦협 력 사 업 자 승인신청업종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p>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능력, 예상 투자규모·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2. 의향서 사본 1부 3. 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사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IV-5.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

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출입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된다.

제3조(개성공업지구 방문절차) ①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방문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다만,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방문증명서용 사진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다만,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의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의 발효 이후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6.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다만,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영 제1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된 방문기간내에 개성공업지구를 수시로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방문시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출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 승인절차)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조성사업자로 하여금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을 위해 제출한 분양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5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04·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V. 남북협력기금법(조문대비)

V-1. 남북협력기금법

V-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V-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 · 개 정 일 지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 정 1990. 8. 1. 법률 제4240호 1 차 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2 차 개정 1993. 12. 31. 법률 제4675호 3 차 개정 1996. 12. 12. 법률 제5170호 4 차 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4호 5 차 개정 1999. 5. 24. 법률 제5982호 6 차 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75호 7 차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36호	제 정 1990. 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1 차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 2 차 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3 차 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4 차 개정 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 5 차 개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6 차 개정 2005.12.14. 대통령령 제19180호	제 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 1 차 개정 1998. 6. 1. 통일부령 제 3 호 2 차 개정 2003. 2. 6. 통일부령 제 17호 3 차 개정 2004. 5.14. 통일부령 제 22호

목 차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218	제1조 목적 218	제1조 목적 218
제2조 정의 218	제2조 기금의 재원 219	제2조 협의회 의결사항 221
제3조 기금의 설치 218	제3조 삭제	제3조 경미한 사항 222
제4조 기금의 재원 218	제4조 삭제	
제5조 장기차입 219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219	
제6조 삭제	제6조 기금운용계획 220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219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220	
제8조 기금의 용도 220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222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224	제9조 지원의 방법 223	
제10조 일시차입 225	제10조 비지정통화 224	
제11조 보고 및 환수 226	제11조 삭제	
제12조 여유자금의 운용 226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224	
제13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227	제13조 기금계정의 설치 224	
제14조 감독 및 명령 227	제1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225	
	제15조 결산보고서 225	
	제16조 기금의 계리 225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226	
	제18조 기금의 환수 226	
	제19조 여유자금의 운용 226	
	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227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1條(目的) 이 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p>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p> <p>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4. 基金의 運用收益金.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p>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部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6.12.12></p> <p>②統一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p> <p>第6條 <삭 제></p> <p>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개정 1990.12.27></p> <p>②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1990.12.27></p> <p>③統一部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p> <p>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4條</p>	<p>제2조(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p>제3조 <삭제></p> <p>제4조 <삭제></p> <p>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p> <p>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0.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개정 1993. 12.31, 1999.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p>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6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부장관은 매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費用的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p> <p>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p> <p>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p> <p>4. 南北交流·協力을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 등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p> <p>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p> <p>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 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償還</p> <p>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p>	<p>(이하 “지원등”이라 한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되 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p> <p>③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p>	<p>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p> <p>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지원</p> <p>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중 다음 각목의 용자</p> <p>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30억원 이상</p> <p>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50억원 이상</p> <p>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이상의 자금지원, 5억원 이상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p> <p>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 이상의 보증</p> <p>5의2.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의 약정 또</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회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p>는 손실보조금의 지급</p> <p>가. 교역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5억원 이상</p> <p>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3억원 미만의 지원 <p>2의2.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중 다음 각목의 용자</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p>	<p>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30억원 미만</p> <p>나. 경제분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 50억원 미만</p> <p>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0억원 미만의 자금지원, 5천만원 미만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p> <p>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p> <p>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 미만의 보증</p> <p>6.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금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p> <p>가. 교육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5억원 미만</p> <p>나.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 : 20억원 미만</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部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事務를 行하게 하기 爲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基金출납공무원을 任命한다. <개정 1990.12.27, 2002.12.30></p> <p>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중에서 基金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수입담당이사는 基金수입정수관의 職務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基金재</p>	<p>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은 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p> <p>제11조 <삭제></p> <p>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1990.12.27, 2002.12.30></p> <p>③<삭제></p> <p>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部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개정 1990.12.27></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p>	<p>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p> <p>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p> <p>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p>제16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p> <p>②統一部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p> <p>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部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p>	<p>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p> <p>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 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1996.12.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p>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p> <p>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部長官은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 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命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1990·8·1></p> <p>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p> <p>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1990·12·31></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1991·3·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附 則 <1990·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 <1993·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 則 <1996·12·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 則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p>	<p>부 칙 <19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p>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p>附 則 <1999·5·2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p> <p>附 則 <19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p> <p>附 則 <2002·12·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p>	<p>부 칙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부 칙 <2005·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1998·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p> <p>부 칙 <200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200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Ⅵ. 남북협력기금관련 하위법규

Ⅵ-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Ⅵ-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Ⅵ-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Ⅵ-4. 교역손실보조금지급 취급기준

Ⅵ-5.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Ⅵ-6.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Ⅵ-7.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VI-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3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유자금의 운용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 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 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p>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의 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p>
<p>제8조(채무의 조정)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무 상 지 원</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주민왕래지원자금</p> <p>제9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p> <p>제10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p>

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 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

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1절 손실보조의 대상

제26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마.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 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

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6조의1(담보하는 위험) 제26조의 손실보조 대상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3. 제26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

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다.

제 2 절 손실보조 약정체결

제29조(약정체결한도)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손실보조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 5억원
-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20억원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30조(약정대상거래) ①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약정 신청자 등) ①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가.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나.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구비할 것

②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⑤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제32조의1(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약정가액과 약정금액) ①손실보조약정가액(이하 "약정가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 "약정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3(손실보조비율) 제3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약정체결 방법) ①약정체결은 개별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품목별로 포

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약정은 기금과 약정신청자가 손실보조 대상거래를 정하여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약정체결하고 기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승인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33조(손실보조수수료)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다.

②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약정의 효력) ①약정의 효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약정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약정변경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선적금액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받는 즉시 약정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손실보조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보조수수료의 환급) ①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제공, 송금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손실보조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보조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절 손실보조금 지급

제38조(사고발생통지 등) ①피약정자는 약정기간중 제26조 내지 제26조의1의 [별표1]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경과후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9조의1(사고조사의 실시)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시 피약정자 및 북한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원인,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사고조사는 서류조사, 현지 출장조사,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손실액의 계산) 손실액의 계산은 발생한 손실액에서 사고발생후 피약정자가 손실경감조치, 전매, 기타 합리적인 조치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또는 이로 인한 손실경감액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3(지급심사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

한 손실발생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손실액계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2. 피약정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거래관계 심사 : 약관의 준수여부(법령위반 포함), 거래계약서의 이행여부, 합리적인 손실경감조치 시행여부, 계약당사자간의 거래관계(거래의 진위 포함) 등
3. 손실액 계산내용
4. 지급판정에 관한 제안 및 필요조치
5. 기타 지급판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0조(손실보조금 지급) ①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에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내로 하며 약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손실보조금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 결정 통보후, 1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거나 사고확정에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약정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
2. 피약정자의 과실, 약관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
3. 피약정자의 약정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제43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아래 각호 1의 사유로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의 일부를 가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80%를 넘지 않

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손실보조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4절 사후관리

제45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피약정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정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의 방지·경감 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약정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회수의무) ①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약정자로 하여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제47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9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지연배상금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비용을 곱한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기 타

제51조(이의 신청) ①통일부장관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고거래의 종결)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 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거래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53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5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6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57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9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대출의 대상, 제54조의 대출비율, 제55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60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 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61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 무 보 증

제62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63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 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64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65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66조(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7조(보전이자율등)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8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조와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9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70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71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

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제72조(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원화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74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7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8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대손충당금) ①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2. 6>

이 규정은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장 손실보조와 관련하여
서는 동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 .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1. 교역손실보조

손실보조대상	담보대상 위험
제26조 1호 가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⑦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⑪의 사유
제26조 1호 나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⑧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의 사유
제26조 1호 다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⑧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 ⑪의 사유
제26조 1호 라목	비상위험 : 아래 ⑫~⑬의 사유 (⑭의 사유 : 특약사항)

- 비상위험 :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 신용위험 : 거래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 북한 계약당사자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 북한 계약당사자에 의한 반출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 북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공급계약 불이행
-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 계약불이행위험 : 북한의 계약당사자가 당국 등인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설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입계되는 설비의 사용불능

2.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

담보대상 위험
○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별표 2]

약정체결 시점 및 약정기간

구 분	약정체결시점	약정기간
제26조제1호 가목	반출전	반출일~결제기일
제26조제1호 나목	제작전	약정체결일~반출기일
제26조제1호 다목	대금 입금전	대금입금일~물품반입기일
제26조제1호 라목	반출전	반출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승인권자가 결정
제26조제2호	-	10년 이내에서 피약정자가 선택

[별표 3]

손실보조 약정가액

구 분	대상금액
제26조제1호 가목	선적금액
제26조제1호 나목	반출계약금액
제26조제1호 다목	입금대금
제26조제1호 라목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
제26조제2호 가목	투자원금
제26조제2호 나목	원금 및 약정이자
제26조제2호 다목	권리등의 취득원금
제26조제2호 라목	물품 및 용역대금
제26조제2호 마목	배당금

[별지 제2호서식]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①보고인	성명 (단체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TEL) (FAX)	
②방문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방문기간 방문 증명서번호
			~ (박 일)
			~ (박 일)
③자금 수령액	금	자금 수령 일자 및 금액	
		○ 19	
		○ 19	
④자금 사용액	금	자금 사용내역	
		○ 교통비 :	
		○ 숙박비 :	
		○ 식비 :	
		○ 기타경비 :	
⑤자금 불용액	금	불용액발생사유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p> <p>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주요자금사용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보 고 인 ㉞</p> <p style="text-align: right;">통 일 부 장 관 귀 하</p>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
 학술체육
 체육
협력지원자금신청서

①신청인	단체명 (성명)	한글 : 한자 :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협력사업 상대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④협력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장소		
⑤자금신청 내용	총소요자금		
	예상수익금		
	자금신청액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대상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기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 청 인 ㉞</p> <p style="text-align: right;">통 일 부 장 관 귀 하</p>			
			수수료 없음

[별지 제10호서식]

경제협력사업
 반출
 반입 } 자금대출신청서

①차주	②대표자																								
③주소	(TEL) (FAX)																								
④사업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⑦자금용도																								
⑧대출이율	⑨대출형식 원화표시 증서대출																								
⑩대출기간	⑪거치기간																								
⑫원금상환방법																									
⑬이자납입방법																									
⑭채권보전	<input type="checkbox"/> 담보 ○ 부동산 <table border="1"> <tr> <th>소재지</th> <th>부동산종류</th> <th>소유자</th> <th>비고</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지급보증서 <table border="1"> <tr> <th>발급예정 금융기관</th> <th>은행</th> <th>지점</th>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 예금·적금 <table border="1"> <tr> <th>예금주</th> <th>예·적금종류</th> <th>금액</th> <th>예치기관</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소재지	부동산종류	소유자	비고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예금주	예·적금종류	금액	예치기관				
소재지	부동산종류	소유자	비고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예금주	예·적금종류	금액	예치기관																						
⑮기타	<input type="checkbox"/> 신용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 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이사회기재결의서 사본 1부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 수수료 없음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별지 제12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

① 의뢰인	상호 및 대표자		
	주요 연락처	(TEL) (FAX)	
② 채무보증 신청내용	보증한도	보증목적	
	수혜자		
	보증기간	— (통산 년 월)	
③ 사업명			
④ 보증대상 채무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이율	대출기간	
	원리금상환방법		
	상환재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재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 수수료 없음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장 및 제7장의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및 채무보증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 14. “재대출”이라 함은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 대출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대출금액의 증액없이 대출기한을 새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15.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16. “여신”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원 또는 융자업무와 관련한 대출 및 보증을 말한다.
- 17. “계획시설”이라 함은 여신신청 투자사업에 의해 건설, 제작, 구입 예정인 공장(기계설비 포함), 건물, 토지 등을 말하며, 신규투자이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투자에 의한 계획시설도 포함한다.
- 18. “지정지구”라 함은 북한내 관련법령에 의해 재산권 및 저당권이 보장되고 등록, 경매절차 등이 명시되어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가. 개성공업지구

나. 기타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제3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제4조(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제5조(회수통화) 대출원금 및 이자는 원화로 받는다.

제6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이자율 산출시 소숫점 두자리 이하는 버린다.

③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지연배상금을 받으며, 지연배상금률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⑤대출이자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마다 받는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경제협력사업대출

가. 투자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나. 운전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다만,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월 후취 가능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매 6월 후취

마. 기타 경제협력사업관련 대출 : 승인권자가 자금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매 1월 후취

3.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1월, 설비 반출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매 6월 후취

제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동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8조(채권보전) ①여신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담보를 선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주 등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경우에는 지정지구에 한하여, 소재자산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후취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거나 신용으로 취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담보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①대출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

②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금으로 제작 또는 구매되는 반출 또는 반입목적물, 해당 반출입계약서에서

정한 차주의 권리 또는 수익금, 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실적한도대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에서 이관됨>

제10조(예외취급) ①이 지침에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제협력사업 대출 및 반출·반입자금대출의 대출금액, 대출조건, 채권보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예외취급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액 5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율을 1% 이하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면책) 이 지침 및 관계법규에 부합하게 취급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출관련 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제42조에서 이관>

제2절 지원 대상

제12조(대출대상)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업무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경제협력사업 대출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3조에서 정한 자
2. 반출·반입자금대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

제13조(우선지원대상) 제12조에서 규정한 대출대상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 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가공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거나, 수산물 계약채취·가공을 위해 어선 및 어구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수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탄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한 자
7. 농업, 어업 및 광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물류비 절감 등 경험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14조(대출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제재조치 이행완료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나. 대외무역법
 - 다. 관세법

라. 외국환거래법

- 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기금수탁관리자의 여신역제기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물적담보 등 양호한 담보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 나.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6. 경제협력사업 대출의 경우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 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하여 진출하는 경우
 - 나.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3절 신용대출

제1관 통칙

제15조(신용대출 대상)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대상자는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별표 2]에서 정한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자로 한다.

제16조(신용대출한도 관리) ①신용대출한도는 [별표 3]과 같이 차주별로 산정한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신규승인액, 기승인액중 미집행잔액 및 기대출잔액의 합계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별표 3]에서 정한 차주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차주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순자산이 큰 경우에는 그 연대보증인 순자산의 일정범위 이내로 한다.

제 2 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 <제4장에서 이관>

제 1 목 단기 반출·반입거래에 대한 특례 <뒤에서 이관>

제17조(적용요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대출신청거래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 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가. 결산 3기 이상일 것
나. 최근 5년 이내에서 2년 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고, 연평균 교역규모가 미화 5만달러 이상일 것
다.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출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기업신용등급 :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재무등급이 6등급 이상

제18조(신용대출한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잔액은 기금의 이익적립금 범위내로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

은 연간 취급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표의 차주별 신용한도 범위내에서 30억원 이내로 한다.

재무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1등급~2등급	순자산의 60%
3등급~4등급	순자산의 40%
5등급~6등급	순자산의 20%

③제2항의 차주별 신용대출한도는 제17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을 차감하여 관리한다.

제19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채권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리규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때 재무등급을 기업신용등급으로 간주한다.

제 2 목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

제20조(적용범위) 이 목에서 규정하는 특례의 적용범위는 지정지구 이외의 북한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적한도대출과 관련하여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침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적용요건) ①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는 북한소재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경제협력사업,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대상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동종업종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일 것.

나. 1년 이상의 대부사업 경험을 구비할 것(원부자재 반출거래에만 적용)

다. 기금수탁관리자가 평가한 기업신용등급이 SM 이상일 것
라.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우량한 제3자가 연대보증할 것

3.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 : 당해 기업이 투자 또는 인수한 자산으로서 북한당국 또는 북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소유를 인정받고 [별표6] 에서 규정하는 취득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해당자산이 북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작방식의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북한소재자산의 대상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2조(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범위) ①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북한소재자산의 신용대출 인정비율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기금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의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율에 10%포인트까지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차주의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 차주 순자산의 70%
2. 기업신용등급 P6 : 차주 순자산의 60%
3. 기업신용등급 SM : 차주 순자산의 5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 신용대출 인정금액은 담보자산으로 의제하여 취급한다.

제23조(대출취급방법)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대출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자금별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취급하되, 북한소재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침담보로 취득하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금액을 제외한 잔여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대출이자율 결정시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취급 부분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에 준하는 가산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반출 실적한도대출을 신청하면서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침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대출 인정비율을 전년도 원부자재 반출실적의 1/4 범위내로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북한소재 원부자재를 포함한 국내의 원부자재에 대하여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할 것
2.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출기간을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설정할 것

제24조(북한소재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기금수탁관리자의 북한소재 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목 부분보증 신용보증서부 대출에 대한 특례

제25조(적용요건)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용보증서부 대출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신용보증서에서 담보하지 않는 미보증금액에 대하여 신용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대상거래 :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 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2. 대상자 :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SM이상일 것
3. 신용보증서 : 남북협력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보증비율이 대출원금의 80% 이상일 것

제26조(신용취급한도) 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잔액은 기업당 5천만원 미만으로 하되, 당해 기업 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이 SM인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잔액합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취급된 신용대출부분은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제 2 장 경제협력사업 대출

제 1 절 통 칙

제27조(대출종류)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이하'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

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이하'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
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 (이하'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
4.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하'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
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제28조(집행방법) ①대출금은 소요시기별로 분할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집행 또는 일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 자기자금과 대출금의 분담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상환방법) ①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연 2회이상 정기 균등분할상환
 2.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
 3.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연 2회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다만, 기금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 상환토록 한다.
- ②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아래 각호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1. 투자자금대출 : 5년 이내
 2.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 6개월 이내

3.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 7년 이내

제30조(사업성 검토 등 의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자금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용역 기관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및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금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신청사업으로서 기금의 심사필요성에 의하여 의뢰하였으나 지원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차주가 비용을 분담한다.

제 2 절 투자자금대출

제31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대출 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소요자금 산정)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자금은 법인설립(인수, 증자 포함), 시설투자 및 확충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서 산정하되,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차감한다.

1. 토지, 건물 및 기자재의 건설, 제작,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2. 출자 또는 대부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3.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 (공장이전비 포함)

4. 기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금

②소요자금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신청일 현재 기지출 비용.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에 포함할 수 있다.
2. 비업무용 토지 및 도로사용권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료
3. 관세를 제외한 조세 및 공과금
4. 공장 또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 및 감가상각분

제33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34조(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투자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운전자금대출

제35조(대출요건) 북한내 현지법인(지사, 공장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기업신용등급이 P5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기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물적담보 등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금이 기지원한 사업으로서 북한내 현지법인의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다음의 기업신용등급별 한도금액 범위내로 한다. 다만, 소액의 개보수투자시에는 1억원 범위내에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기업신용등급	대출한도
P1 ~ P2	1회전 운전자금 × 120% 이내
P3 ~ P4	1회전 운전자금 × 110% 이내
기 타	1회전 운전자금 × 100% 이내

제37조(1회전 운전자금) 1회전 운전자금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운전자금 용도로 조달한 금액은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38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9조(대출기간의 연장) ①차주가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는 차주의 신용도, 북한내 현지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심사하여 대출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3회까지 가능하며,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액의 1/4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 4 절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

제40조(대출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거래를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분양대상 산업용지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로서 단지내 산업용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 나.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재산권(소유권, 저당권 등) 등이 관련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2. 신청자가 아래 각목의 요건을 구비하는 자일 것
 - 가. 기업신용등급 P5 이상인 자

나.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제협력사업승인 취득 및 공장건설 착공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제41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산업용지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42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환토록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산업용지분양자금을 포함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한 경우
2. 대출집행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 등 사업추진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제43조(집행절차) 대출금은 대금납입시기에 따라 집행하되, 차주로부터 자기자금 송금사실을 확인한 후 분양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제44조(대출요건) ①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출대상으로 한다.

1. 당해 사업내용이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구비할 것
 - 가.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에 기여하거나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
 - 나.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

다.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2.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
-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 4. 사업추진방식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기간이 대출기간 만료후에도 10년이상 존속하는 계약방식
- 나. 기타 통일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계약방식

제45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당해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총사업비용의 100분의 80 범위내로 한다.

제46조(대출조건) ①대출기간은 사업규모,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②대출이자율은 미래현금흐름, 사업의 성격,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연 3%이내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제47조(지원방침의 결정)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의 지원방침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8조(채권보전) 제8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보전절차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 사업의 자산(설비, 건물, 토지, 현금, 채권 등으로서 장래 취득분을 포함한다) 및 수익금의 담보 취득
- 2. 관련 계약서상의 차주의 일체 관리에 대한 담보 취득
- 3. 북한 당국 및 사업주의 사업지원 보증서 또는 확약서 취득

4.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보장 또는 확약서

5. 기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세부 취급사항) 통일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 취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절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

제50조(취급요건)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은 투자자금대출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대출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1. 후취담보 취득대상 자산이 지정지구내 소재할 것
- 2. 신청사업이 계획시설공사일 것
- 3. 신청자가 기업신용등급이 P4이상이거나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할 것

가.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3배 범위내일 것

나. 자기자본회전율이 동종업계 대비 1/2 이상일 것

다.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기술인력의 확보, 합작 파트너의 사업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라. 공사기간중의 신용취급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자 또는 신용이 양호한 자가 연대입보할 것.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대출금액) 자금별 대출금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70 범위내로 한다.

제52조(담보의제) ①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차주별 신용대출한도에서 제외한다.

②공사기간중 후취담보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적담보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한다.

제53조(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①후취담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 양도담보취득 등으로 담보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계획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기성과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한다.

③기타 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대출이자율 조정) ①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재평가하고 해당 대출이자율을 조정한다.

②대출이자율 조정시 적용되는 기준금리 및 신용위험가산율은 당초 지원방침 결정시점의 대출이자율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조정된 대출이자율은 공사완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정수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5조(집행절차) ①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출승인액의 80%에 달할 때까지 사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집행액이 대출승인액의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현장점검 및 대출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출금 집행방법은 차주의 지급위임을 받아 해당시설 공급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주앞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설비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자체공사 또는 시설공급자별 집행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기업신용등급이 P4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투자자금을 사전집행하는 경우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56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반출목적물의 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반입금액(반입선급금액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범위내.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 범위내

②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 또는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반입선급금액을 산정한다.

1. 계약재배·가공에 의한 농작물 반입자금대출 :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
2. 계약채취·가공에 의한 수산물 반입자금대출 : 어선과 어구 자재 반출비용

제57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 설비 반출자금대출

제59조(대출금액) ①대출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소요자금의 100분의 80범위내로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100분의 90범위내로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설비반출거래에 소요되는 자금

②제1항에서 규정된 소요자금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원부자재의 구입 및 운송비
2. 설비의 구입 · 포장 · 운송 및 현지조립 · 설치비
3. 유희산업설비 반출의 경우 제2호와 설비의 성능검사 및 해체 · 보수비

제60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6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다만,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수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역 당사자간의 위탁가공용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2. 기타 통일부장관이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1조(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토록 한다.

1.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대출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2.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대출 :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 1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 3 절 실적한도대출

제62조(실적한도대출 대상) 실적한도대출은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반출·반입자금대출 거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3조(대출금액) ①차주별 대출금액은 남북교역실적을 기초로 산정하되, 차주의 교역시행기간에 따라 아래표의 교역실적 인정 비율 범위 내에서 1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거나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교역시행기간	남북교역실적 인정비율
최근 5년이내에서 3년이상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7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80
최근 5년이내에서 3년미만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교역실적의 100분의 50. 다만, 중소기업은 100분의 60

②제1항에서 규정한 남북교역실적은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의 50%로 한다. 다만, 제6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로 본다.

제64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①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근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는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대출승인신청 직전년도의 연간 반출입실적 합계
2.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과거 1년간의 반출입실적 합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금결제자가 수반되지 않는 무상지원, 경제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실적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반출입실적은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정시점 이전단계의 반출입계약서 또는 관련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출입실적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산입된 금액은 향후 반출입실적 산정시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반출 : 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된 때, 반출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해당 수출환어음이 추심 전 매입되거나 또는 추심 의뢰된 때
2. 반입 : 반입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금이 지급 지시된 때, 반입관련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결제 지시수권서 또는 인수확약서가 발송된 때

제65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66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①대출금은 채권보전 후 일시에 집행한다.

②대출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분 상환토록 할 수 있다.

③재대출 경우에는 만기일에 상환되는 금액과 신규 대출금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7조(중복수혜 금지) 실적한도대출의 수혜기업은 남북교역실적 산정에 포함된 관련 계약서 등에 터잡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무역금융 등을 중복 수혜받을 수 없다.

제 4 장 협조대출제도

제68조(취급원칙) ①경제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관계법 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협조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대출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금과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한한다.

③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은 [별표10]의 협약문안에 근거하여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협약과 달리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69조(채무보증) ①기금은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 취급분에 대하여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채무보증금액은 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이내로 한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우량하다고 인정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할 수 있다.

③채무보증료율과 대지급료율은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취급절차)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차주로 하여금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취급동의서를 대출승인 또는 채무보증승인 신청서에 제출하게 한다. 다만,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대출의사가 확인된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집행전까지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승인 및 채무보증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는 협조대출취급조건을 협조대출 참여기관에게 통지하며, 차주 또는 협조대출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발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사후관리) 기금이 협조대출 참여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대상거래에 대한 담보는 기금이 취득·관리 및 처분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사후관리 등

제 1 절 관리업무

제72조(관리업무) ①사업진행상황, 거래기업의 신용상태 및 약정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관리
2. 동태점검
3. 약정관리
4. 담보관리
5. 상시관찰기업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질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 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73조(대출금 사용확인) 대출금 집행후에는 차주로부터 관련증빙을 받아 대출금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집행 중지,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4조(사업진행상황 조사) ①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제협력사업 대출, 위탁가공용 반출설비 대출에 대하여는 공정진행, 사업운

영상황, 회수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관리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차주 및 해당사업체(북한현지법인 포함)로부터 연1회 이상 재무자료 징구
 2.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채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추가 징구 또는 경영현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현지조사 실시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사업이 약정기일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행사유 및 증빙서류를 징구토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이행 촉구,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5조(동태점검) ①기업신용등급이 P4이하이고,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신용여신잔액이 10억원 이상인 차주에 대하여는 매 반기별로 [별표 9]에서 정한“기업동태점검표”에 따라 재무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동태점검 결과 다음 각호 1의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신용등급 조정, 상시관찰기업 선정(신용여신잔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최근 6개월내 신용등급 2단계 하락
2.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
3. 외부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4. 해당기업에 대한 소송제기, 언론매체의 중대악재 보도 등
5.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발생 등
6.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 발생 등

제76조(약정관리) ①경제협력사업 대출, 기타 특별약정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약정 및 특별약정 내용의 이행상황, 불이행사유 등을 점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약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소명토록 하고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기간내 이행가능한 경우 : 서면으로 약정이행 촉구
2. 위반사항이 중대하고 향후 이행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약정변경, 대출승인 취소, 기한전 상환청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제77조(담보관리) ①담보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태변화, 가격변동 등을 조사한다. 다만,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고 거래현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및 동산(양도담보물 제외): 연 1회 이상
2. 기타 담보 : 기금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②제1항의 조사결과 담보물의 멸실·훼손, 현저한 가격하락 발생시에는 추가담보 취득 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이 양호하고 취득한 담보에 비하여 대출잔액이 적은 경우로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구 북한담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상시관찰기업) ①상시관찰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제75조의 동태점검 결과 상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2. 신용여신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업신용도 평가결과 S등급으로 확정되거나 기타 상시관찰기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②제1항의 상시관찰기업의 경우에는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앞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경영 전반과 여신거래내용을 계속 관찰하고 필요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앞으로 보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 타

제79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①실적한도대출 지원거래에 대하여는 대출집행후 매 6개월마다 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매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남북교역실적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대출한도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침 결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0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①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보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생략

부 칙<2000.1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3. 2.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부 칙<2004. 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②이 지침의 “제4장 제2절 북한소재자산 제공기업에 대한 특례”는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시행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탁가공용설비 반출 자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 1.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에 따른다.

[별표 1]

대출이자율의 결정 기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 : 고정금리로 운용
-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 : 기준금리에 신용위험가산율을 더한 율
- 다. 대출이자율(가산율 포함)의 확정기준일 : 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되,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평균 해당기간물의 유통수익률로 적용함.

대출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 물	1년 물	3년 물

3. 신용위험가산율

가. 신용위험가산율은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아래표에서 정하는 가산율로 차등적용함.

구분	적용기준	가산율
지급보증	i)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포함)	-1.0%
	ii) 기타 i)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물적담보	금융기관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0.5%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	
신용대출	장기신용등급 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²⁾ P1~P2급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
	장기신용등급 BBB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3 ³⁾ ~P4급 ³⁾ 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2%
	기업신용등급 P5~P6급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0.5%

- 1) 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포함(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
- 2) 제4장제1절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특례에 의한 경우에는 제4장제1절의 규정에 준함
- 3) 기업신용등급 P3+, P3-는 P3로, P4+, P4-는 P4로 각각 봄

나. 동일한 신청전에 대하여 적용할 신용위험가산율 적용기준이 대출부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출부분별로 각각 산출한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하거나, 대출부분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종 대출이자율에서 0.5% 차감하여 적용함.

라.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신용위험가산율을 적용함.

[별표 2]

신용대출 대상 기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5년 초과 : 장기신용등급 AA 이상
- 나. 대출기간 5년 이하 : 장기신용등급 BBB 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 가. 대출기간 2년 초과 : 기업신용등급 P4급(P4+, P4- 포함) 이상
- 나. 대출기간 2년 이하 : 기업신용등급 P6 이상

[별표 3]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AA 이상	순자산의 70%
A 이상	순자산의 60%
BBB 이상	순자산의 50%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P1	순자산의 70%
P2	순자산의 60%
P3(P3+, P3- 포함)	순자산의 50%
P4(P4+, P4- 포함)	순자산의 40%
P5	순자산의 30%
P6	순자산의 15%

[별표 4]

지 연 배 상 금 률

연체기간	지연배상금률
30일 이내	대출이자율 + 3%
90일 이내	대출이자율 + 6%
90일 초과	대출이자율 + 9%

[별표 5]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대출인정비율

목적물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P6	SM
토 지 이 용 권	임대료 40%	30%	20%
건 물	잔존가치 ¹⁾ 40%	30%	20%
기 계 설 비	잔존가치 ²⁾ 40%	30%	20%
원 부 자 재	구입가 ³⁾ 40%	30%	20%

- 1) 신규는 신축비용, 기존건물은 잔존가치(임대료포함)
- 2) 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 및 임가공상계금액 제외
- 3) 세금계산서상의 구입금액(또는 납입영수증)

[별표 6]

북한소재 자산의 취득방법 및 사후관리

1. 취득방법

가. 남한주민에 의한 단독투자시

목적물	취 득 요 건
토지이용권 및 건물	- 북한 토지임대기관에 저당권을 등록 - 저당권 행사 등에 관한 북한 토지임대기관의 보장서 ¹⁾ 징구 - 현지 實査 실시후 취득. 단, 필요시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에 實査 의뢰 - 임대잔존기간이 대출만료시점에서 10년 이상 존재 - 임대료 건액 납부 완료 - 건물의 부속 기계설비는 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
기계설비	- 북측과의 계약서에 남측 투자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 - 북측 계약자의 양도담보권확인각서 ²⁾ 징구 - 차주의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 ³⁾ 징구
원부자재	- 차주로부터 해당 원부자재의 반출 증빙서류 징구 - 북측 계약자의 원부자재 및 가공품에 대한 양도담보권확인각서 ²⁾ 징구 - 차주의 해당 원부자재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 ³⁾ 징구

- 1) "기금의 저당권행사 인정, 저당권행사기간중 토지사용료 면제, 철거비를 요구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2) "기 상계한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기계설비의 반출 또는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원부자재 및 가공품의 반출을 보장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지정지구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양도담보계약서는 해당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합영방식에 의한 투자시

- 남한주민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북한소재자산에 한하여 인정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함
- 당해 법인(합영회사)으로부터 양도담보제공확약서 징구.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첨부
 - 당해 법인과외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법인 의사결정기관의 결의서 첨부).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 당해 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권 실행 및 반출보장 각서 징구. 단, 복측 관계당국 및 복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 현지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단, 필요시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
- 차주에 대하여는 특약 체결 (담보의 제공·유지, 담보권 실행 등에 대한 제반 협조의무 수행, 기금 수탁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수행 등)

2. 사후관리

가. 대출금사용 확인

- 자금인출전 대출집행계획서 징구
- 대출금사용 관련 증빙서류 징구
- 차주에게 자기자금과 대출금간의 투입비율 유지의무 부과

나. 북한자산의 관리

- 토지이용권 및 건물 : 차주로부터 매년 1회 건물, 토지관리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이행실적 보고서 징구
-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 차주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리상태보고서를 징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다. 차주의 담보관리 의무 불이행, 담보물의 멸실·훼손, 권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출금액 감액, 채권 보전 보장,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함.

라. 채권회수절차

- (1) 1차적으로 차주의 국내외 자산 등에 대하여 채권회수 노력
 - 원부자재 포괄양도계약 : 국내 원부자재 담보권 실행 등

(2) 북한 자산

① 토지이용권 및 건물

- 차주에게 저당권실행에 필요한 의무사항(현장확인 보장, 저당물 관리, 원매자 물색 등)을 수행토록 함.
- 매 2년 마다 편익비용 분석(전매가능성, 관리비용 등)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자산의 관리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당권유지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함.
- 저당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시 통일부장관의 가지금급한도승인을 받아 적절한 관리를 수행함.(저당물 공고, 전문기관 알선외, 토지이용권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지출 등)

② 원부자재 및 기계설비

- 차주로 하여금 반출후 미반입된 원부자재(재공품, 제품 포함) 및 기계설비를 반입후 번제토록 중용
-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수가치가 회수비용에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양도담보권 포기

[별표 7]

1회전 운전자금 산출

1.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법인(지사,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의 방식을 택하여 산출함
 - 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 나.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1회전기간/365
 - 1회전기간(1/매출채권회전율+1/재고자산회전율-1/매입채무회전율)×365
 - 단, 1회전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0일을 1회전기간으로 함
2. 북한에 기진출한 사업으로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1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별표 8]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1.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 가. 요율산정체계 : 기준보증료율 + 신용위험수수료
 - 나. 기준보증료율 : 연 0.5%
 - 다. 신용위험수수료 :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 위험가산율의 40% 적용
2. 대지급료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 가. 대지급기간 30일 이내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3% 포인트
 - 나. 대지급기간 90일 이내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6% 포인트
 - 다. 대지급기간 90일 초과 : 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 + 9% 포인트

[별표 9]

기업동태점검표

(년 월 일)

1. 기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실립일자	
주요생산제품		업종	
신용등급		회사채등급	

2. 재무상황

구분	항목	년	년	년	금년반기결산일
재무상황	총자산				
	총차입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회전율				

3. 기업동태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연체여부 등) ·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 발생 · 공인회계사 의견(감사의견) · 소송제기, 중대약재 보도 등 ·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등 ·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항 	

4. 심사의역 종합의견

[별표 10]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이하 "기금대출"이라 한다.)과의 협조대출에 참여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조대출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한 지원범위내에서 갑이 취급하는 기금대출 지원사업에 을이 협조대출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협약의 적용대상 대출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기금대출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을은 이 협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대출금액) ①갑과 을의 대출금액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에서 갑의 기금대출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5조(대출형식) 대출형식은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은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종류별 대출기간 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기간은 갑의 기금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기간을 5년 이상에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상환방법) 을의 대출금은 기금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토록 하며, 상환받는 금액은 갑과 을의 대출분담비율,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상환계획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기타 대출조건) ①대출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갑의 취급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며, 을의 취급분은 을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이 적용할 대출이자율 수준 등에 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채무보증) 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을의 취급분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담보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갑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채무보증금액)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범위내로 한다. 다만, 갑은 대상거래의 지원 필요성,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취급절차) ①갑은 차주로부터 대출상당 또는 대출신청을 받고 차주의 요청이 있거나 거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을에게 협조대출을 신청토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갑에게 협조대출 의향서 또는 동의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 1의 절차에 의하여도 협조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이 협조대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추천
2. 을이 차주의 요청에 따라 갑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협조대출 취급의향서를 발급. 이 경우 갑은 협조대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③갑과 을은 신속한 협조대출 처리를 위하여 차주와의 상담진행과정에서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④차주는 갑과 을에게 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제공한다.

⑤갑은 차주에 대한 지원방침이 결정되는 즉시“협조대출취급조건통지서” 및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⑥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발급하고, 을은 갑의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⑦갑과 을은 대출취급시기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감 등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

제12조(심사 등) 차주 및 대출신청사업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갑과 을 각자의 관계법규 및 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사후관리) 갑은 이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대출금의 회수와 담보의 관리 및 처분 등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차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차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상호협조 등) 갑과 을은 기금대출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그 업무가 신속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6조(기 타)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으면 1년씩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이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협약에 명시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기 취급한 협조대출전에 대하여는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_____	_____	_____
			을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장 제2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 한다.

제3조(우선지원대상)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
2. 남북한 청소년·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3. 남북한을 상호 교환하여 시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협력사업
4.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협력사업
5.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
6. 의료, 보건 등 사회복지관련 협력사업
7.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발전·보존·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협력사업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시행하는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이거나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5조(지원한도) ①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 등 협력사업 시행에 실제 소요되는 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이내로 한다.

1. 협력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2. 이미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행정경비 등 협력사업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
3. 접대비, 기밀비 등 협력사업 시행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된 국내의 여비 중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를 초과하는 금액
5. 찬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조달한 금액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기금의 지원은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 범위 이내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에 제공한 물품 등의 지원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④기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이후에 발생한 부족액(경비의 초과지출, 추가경비의 발생, 예상수익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협력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금의 집행 및 사용) ①협력지원자금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과 협력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소요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실제 소요시기에 집행한다.

②기금에서 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자체조달 자금을 협력지원자금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③협력지원자금은 집행 비목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 결정 시 승인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 앞으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력지원자금 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예금통장 사본, 출납장부 사본, 비목별 자금사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협력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

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사회문화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제2조 내지 제4조의 지원대상, 제5조의 지원한도, 제6조의 자금의 집행 및 사용, 제7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부 칙 <2001. 12. 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VI-4. 교역손실보조금지급 취급기준

교역손실보조금지급 취급기준 <제정 2004. 5. 14>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적용원칙) 손실보조금의 지급 및 채권관리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손실보조지원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약정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피약정자간의 일반적·표준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손실보조약관을 말한다.
 - 가.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약관
 - 나.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약관
 - 다. 반입손실보조 약관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7. “단순대행반출(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입)의뢰자와 반출(입)계약상대간의 반출(입)거래를 피약정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속반출(입)거래”라 함은 피약정자가 동일한 북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입)하는 거래관계(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반출(입)거래까지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유예기간”(이하 “신청유예기간”이라 한다)이라 함은 피약정자가 사고발생통지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손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

제 2 장 사고발생통지

제2-1조(사고발생통지 등) ①피약정자는 약관에서 정한 담보위험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위험발생통지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약관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결제기일(반입손실보조의 경우 납기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손실발생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소정의 손실발생통지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

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 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④피약정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거나, 대금결제 및 계약이행 등으로 손실발생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발생통지 접수)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피약정자, 사고금액, 북한계약상대방 및 약정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한다.

제2-3조(사고발생통지시의 처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북한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약정제한조치 발동
2. 사고조사의 착수
3. 채권보전 및 손실경감조치 행사
4.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한 사고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사고조사

제3-1조(조사의 시기)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피약정자로부터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고발생통지,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

고조사를 실시한다.

②피약정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사고조사의 방법) ①조사는 서류조사, 출장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두조사사항은 추후 서면 자료를 보완한다.

②북한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조사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피약정자 및 관련 업계의 진술
2. 기금수탁관리자의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
3. 재외공관, 기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한 조사
4. 제3국의 전문조사기관 또는 북한의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
5.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

제3-3조(사고조사사항) 사고조사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약정자
 - 가. 약관 등 기금관련법규 준수여부
 - 나. 약관상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가중여부
 - 다. 반출입거래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이행상의 하자유무
 - 라.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및 결제실적
 - 바. 연속거래에 있어서 선행 반출 또는 반입거래간의 결제현황

- 사. 사고건의 해결을 위한 접촉내용 및 조치내용
- 아.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여부, 처분전망
- 자. 여신 및 담보현황
-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방 등

- 가. 파산, 대금결제지연 또는 계약불이행 등 사고사유
- 나. 당사분쟁의 발생여부
- 다. 계약대상물품의 판매, 재고 및 처분전망
- 라. 향후 결제 또는 회수, 계약이행 전망
- 마.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실익유무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북한(비상위험사고의 경우)

- 가. 비상위험 발생사유 및 내용
- 나. 사고와 비상위험간의 상관관계, 파급효과
- 다. 비상위험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 라. 북한계약상대방의 현지화 입금 또는 외화할당 신청여부
-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3-4조(사고조사 기한) 사고조사는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당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 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발생원인, 귀책관계, 예상손실규모, 필요한 조치사항,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피약정자로 하여금 먼저 취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추심기관앞 추심의뢰여부 결정 및 실행
2. 손실보조금 지급시 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반출입 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조치 행사
3. 기타 필요한 조치

③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가 피약정자의 사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해지, 고소 등 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지급심사

제4-1조(손실보조금 지급신청 및 접수) ①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
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손실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약정(이하 “특약”이라 한다)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선적후 반출손실보조 : 결제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 단, 약관상의 비상위험 및 북한계약상 대방 지급불능에 의한 사고 발생 통지인 경우에는 그 결제 기일 이후.
2. 선적전 반출손실보조 :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
3. 반입손실보조 : 납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 단, 약관상의 비상위험 및 북한계약상대방의 파산 등 반입불능에 의한 사고발생 통지인 경우에는 그 납 기일 이후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단순대행반출(입)에서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약정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대행반출(입)의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6월 동안 구상권을 행사한 후가 아니면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4-2조(지급심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

②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

1. 사고의 발생원인

2. 피약정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
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
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
5. 상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
6. 기타 손실보조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지급심사 처리기한)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39조의3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손실보조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4조(지급방침의 종류) 손실보조금 지급방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2. 면책

3. 지급거절 등

제4-5조(면책)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처리 한다.

제4-6조(지급거절 등) ①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약정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약정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약정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발생한다.

제4-7조(신용장 불일치 사고건의 처리)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용장조건 위반사유가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적 은행표준관행에 비추어 중요하지 아니한 사소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피약정자의 과실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 과실로 볼 수 있다.

제4-8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①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②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제4-9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거래관행 인정) ①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동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

1. 연속반출거래

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연속반입거래

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중 무신용장거래 물품반입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물품반입계약의 이행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 범위내에서 지급된 경우. 단,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반입물품 이행내용의 하자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중에 있는 상태에서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북한계약상대방과 중재, 합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분쟁이 정당하게 해결된 경우. 단 최장 분쟁해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②제1항의 면책결정기준이 되는 거래건이 결제기일(이행기일)에

지급(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북한계약상대방의 영업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 등 구체적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기인하거나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이행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을 피약정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0조(손실보조금의 산정) ①손실보조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손실보조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제4-11조(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피약정자가 약정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2조(손실액의 산정의뢰) 제4-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금의 지급

제5-1조(손실보조금 지급 등) 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손실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손실보조금은 피약정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손실보조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피약정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1. 반출회환 어음
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3. 반출입계약서
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④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치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연체금이율은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손실보조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1. 피약정자와 북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손실보조금을 가지급할 경우 지급전에 피약정자로부터 추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 손

실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비용의 보전) ①피약정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보전가능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1인의 1회 왕복보통운임. 단, 항공기, 선박, 철도에 의한 이동(국내외 이동 및 출장지내 이동 포함)시 소요되는 비용(공항이용료 포함)으로서 순로의 2등석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 단, 숙박일수 및 여행일수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날수에 1인당 미화 200달러 범위내에서 인정하되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5. 기타 피약정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의 보전은 동 의무이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회수전 또는 회수금액 확정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채권보전 및 회수

제6-1조(전매의 승인) ①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반출입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청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할 수 있다.

1. 전매 구매자
 2. 반출입물품의 품질 및 보관상태와 그 상품의 시황
 3. 전매단가, 전매수량, 전매금액의 결정방법 등 전매계약조건
 4. 결제조건
 5. 기타 전매관련 비용 등
- ②유리한 전매가격, 전매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약정자의 협조를 얻어 기금수탁관리자가 전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③반출입물품의 특성 또는 최선의 전매를 위하여 피약정자가 전매 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6-2조(가지급금 반환) ①손실보조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피약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6-3조(지연배상금율) 약관과 약정증서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다.

제6-4조(사고거래의 종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

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 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

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
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VI-5.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취급기준 <제정 2004. 9. 23>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 및 손실보조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손실보조 지원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약정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피약정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약관을 말한다.
 - 가. 지분등 투자손실보조 약관
 - 나. 대부등 투자손실보조 약관
 - 다. 권리등 투자손실보조 약관
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협사업자"라 한다)이 단

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말한다.

6. "지분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
 - 나.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
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

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

나.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를 반출하는 것

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투자의 경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

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

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

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

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

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14. “손실보조약정가액”(이하 “약정가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금과 피약정자가 약정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

다. 권리등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

15. “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 “약정금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피약정자와 약정한 손실보조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7.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18.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9. “신용불량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말한다.

제1-3조(적용원칙) 경험사업 손실보조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약관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적용대상종목) 경험사업 손실보조는 다음 각호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지분등 투자손실보조”는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

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대부등 투자손실보조”는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 “권리등 투자손실보조”는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위탁가공용설비를 반출 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약정의 제한 등) ①약정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한주민

- 가. 피약정자의 기업신용등급이 S등급 미만인 경우
 - 나. 피약정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조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다. 피약정자가 손실보조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연체 중인 경우
2. 북한에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3. 투자금의 전부중 일부만을 약정신청하는 경우. 다만 기약정 투자의 건으로서 증자약정 요청에 대해 기금에서 증액약정

을 거절한 경우는 제외

4. 투자금을 분할송금하는 경험사업에 있어서 최초 분할송금분과 이에 연속하는 분할송금분 전부에 대해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5. 거래의 내용이 기금관련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기금은 피약정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1.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2. 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3. 손실보조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북측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약정의 제한)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정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 약정금액, 약정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신용조사

제2-1조(신용조사의 실시)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체결에 앞서

약정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 부여된 평가 등급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신용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조사를 위하여 약정신청자는 자신과 거래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재무관련 자료와 거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제2-2조(신용조사의 방법) ①약정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는 기업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투자기관, 국내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동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평가를 생략하고 기업신용등급 1등급을 부여한다.

제2-3조(신용조사 처리기간) 신용조사는 신용조사의뢰서 접수후 7영업일 이내에 완료하고, 약정신청자에게 약정체결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제2-4조(신용등급 유효기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평가한다.

1. 제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약정신청자의 재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장 약정의 승인

제3-1조(예비신청) ①경험손실보조 예비신청서는 투자송금일 이전에 아래 각호의 서류와 함께 받는다. 다만, 경험사업금액이 미화 3백만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재무제표 등

3. 합작·합영 투자계약상대방의 개요 (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②제1항의 예비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약정가능 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1. 경험사업의 내용

2. 남한주민의 신용도 및 북한의 합작투자계약상대방(합영투자 계약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도

제3-2조(약정신청) 신용조사 및 예비신청 검토결과 약정가능한 경우에는 약정신청자로부터 손실보조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투자송금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받는다. 다만, 투자송금일 전에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 이후라도 약정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1. 경험사업과 관련된 투자계약, 대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증명서류 및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포함)

2. 경험사업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의 별도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을 증명하는 서류

3. 협력사업승인서 및 승인신청서 사본

4. 사업계획서

5.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신출명세표

6. 피약정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북측 합작투자계약상대방의 개요

8.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대북투자 신고수리서 등)

9. 기타 통일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제3-3조(약정심사)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약정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사업환경
2. 경험사업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약정 등
3. 제3국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지급보증기관의 채무이행능력 및 신용상태
4. 남한주민의 신용도 및 북한의 합작투자계약상대방의 신뢰도
5. 경험사업계약 또는 경험사업계획의 내용
6. 기금관련법규 부합 여부
7. 약정조건(이 기준 및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특약사항 등)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약정의 승인) ①통일부장관은 제3-3조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약정승인 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피약정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약정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승인내용, 수수료 산정내역 및 납부기한을 동시에 통보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정승인 통보기한에 불구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기약정투자의 증자등에 대한 약정승인) ①당해 투자의

증자 이전에 투자분 전액에 대해 이미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당해 증자등(유무상증자, 사채 및 채권의 증액, 권리등의 추가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약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자등에 대한 청약서는 당해 투자송금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경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자 이전 투자분의 예비신청 또는 약정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증자분 내용심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제출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미약정 기투자분에 대한 약정승인) 경험사업자가 기투자완료된 경험사업에 대하여 약정 신청한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당해 신청내용이 제1-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정을 승인할 수 있다.

1.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에 의한 실사(확인 포함) 실시
2. 투자금 산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가. 지분등 :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평가결과 직전회계년도말 자본잠식분을 차감한 납입자본금에 대하여 경험사업자의 지분비율을 감안하여 산출
 - 나. 대부등 : 대부원금
 - 다. 권리등 : 권리등의 취득원금에 대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감가상각분 및 잔여년수를 감안하여 산출
3. 피투자회사의 평가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제3-7조(약정의 효력발생) 피약정자가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피약정자에게 약관과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제3-8조(약정금액) 약정금액은 약정가액에 아래 각호의 손실보조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경제특구지역 : 100분의 90 범위내
2. 북한일반지역 : 100분의 70 범위내

제3-9조(약정기간) ①약정기간은 10년 이내로서 남한주민이 신청하는 바에 따르되, 최초투자송금일로부터 최종사업연도 채권상환 만기일까지며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약정건은 동건 약정체결일로부터 시작된다.

②최초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송금일로부터 송금일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그 익년도부터는 매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약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최종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초일부터 채권상환만기일까지를 약정기간으로 한다.

③약정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약정건은 당해 약정체결일로부터 시작된다.

④최초 약정체결시에 정한 약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되는 약정기간의 개시일은 최초 약정체결시에 정하여진 약정기간 종료일의 익일로 한다.

⑤제4항의 약정기간 연장신청은 직전 약정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신청된 건에 한하여 제3-3조의 규정을 준용·처리한다.

제3-10조(분할송금의 취급) ①투자금을 분할하여 송금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최초 분할송금분에 대해서는 동 송금분을 기준으로 약정금액을 산정한다.
2. 2회차 이후 분할송금분에 대해서는 당해 투자송금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손실보조약정변경 신청서(이하 "약정변경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회까지의 약정금액에 당해 송금분에 대한 약정금액을 합산하여 증액 처리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변경신청서 제출기한 이후라도 약정변경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정금액을 증액한 경우, 기발급된 약정증서를 회수한 후 증액된 약정금액을 반영한 약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3-11조(약정금액의 감액) 피약정자가 약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약정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약정금액의 감액을 위하여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3-12조(약정내용의 변경) ①피약정자가 경험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중대한 변경을 하고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관계 해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경험사업의 복측투자계약상대방 변경
2. 경험사업의 지역 변경
3. 경험사업의 사업내용 변경
4. 북한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 허가내용의 변경
5. 대부등의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상환조건의 변경

②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20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방침을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즉시 이를 피약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의 약정변경신청서는 투자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계약의 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제출받을 수 있다.

④피약정자가 경험사업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문의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여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3조(다른 계약의 통지) 피약정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수수료 납부

제4-1조(수수료 납부) ①제3-3조에 의하여 약정승인을 통지한 경우의 수수료와 제3-10조제1항제2호 및 제3-12조에 의하여 약정내용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의 추가수수료는 약정승인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기금의 요청에 의한 내용변경의 경우에는 추가수수료를 면제한다.

②피약정자가 제1항의 수수료(추가수수료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와 그 수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약정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③피약정자가 제2항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제4-2조(사업년도별 수수료) ①수수료는 최초 사업년도 수수료 및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하도록 통지하며, 최초사업년도 수수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약정증서를 발급한다.

1. 최초사업년도 수수료 : 약정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납부
2. 계속사업년도 수수료 : 전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납부

②최초사업년도 수수료는 투자송금일부터 투자송금일 다음 회계연도(피투자회사등의 회계연도를 말한다) 말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납하며,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는 최초사업년도 다음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수납한다. 다만, 최종 사업년도 수수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초일부터 채권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 등 1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의 취득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원리금 회수기간별로 산정한 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사업년도 수수료 해당기간은 투자송금일부터 최초원리금 회수일까지로, 계속사업년도 수수료 해당기간은 최초 약정기간 이후의 각 원리금 회수기간으로 본다.

④내용변경 또는 약정금액 증액에 따른 추가수수료는 내용변경일 또는 투자송금일부터 당해 내용변경일 또는 투자송금일이 속하는 제2항의 최초 사업년도 또는 계속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납하며, 그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또는 증액된 사항을 기준으로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를 수납한다.

⑤약정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후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제 1항의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를 수납한다.

⑥기금수탁관리자는 피약정자에게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 납부 통지를 최초 사업년도 수수료기간 또는 전회의 계속사업년도별 수수료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제4-3조(수수료 환급) 피약정자가 약관에 의하여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수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장 손실보조금의 지급

제5-1조(손실보조금 지급업무 적용원칙) 경험사업 손실보조금 지급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손실보조 관련 「손실보조금지급 취급기준」에 따른다.

제5-2조(지급신청 유예기간) 피약정자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에 경험사업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가지급금) 경험사업 손실보조금의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제5-4조(피투자회사등의 평가)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제5-5조(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

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제5-6조(최저 손실보조금) 피약정자와 연속 3년이상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손실보조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손실보조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피약정자에게 최저손실보조금을 지급한다.

1. 연속 3년 : 약정금액의 1%를 곱한 금액
2. 연속 3년 이후 : 매년 약정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제5-7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①지분투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순자산평가액과 사고후 순자산평가액을 비교하여 감소분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조한다. 단, 직전회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기회비용(전월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한도로 한다.

②대부등 투자의 경우는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조한다.

③권리등 투자의 경우는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6-1조(수수료 수납 및 적용환율) ①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약정 효력발생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으로 한다.

제6-2조(약정금액 등의 단수처리) 약정가액, 약정금액, 수수료, 손실보조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약정가액, 약정금액, 수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가. 약정가액, 약정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나. 수수료, 손실보조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2. 약정가액, 약정금액 또는 수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숫점 둘째자리 단수절사

제6-3조(서류제출일의 기준) ①이 기준에서 피약정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부 칙 (제 정)

이 기준은 2004. . .부터 시행한다.

VI-6.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특별지원대상자"라 함은 남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지원을 받거나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사확인 경비 :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
2. 상봉 경비 :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이나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산가족이 재상봉을 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류지속 경비 :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

제4조(지원금액) 경비지원은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

요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사확인 경비 : 80만원
2. 상봉 경비 : 180만원
3. 교류지속 경비 : 40만원

제5조(경비지원 신청) 이산가족은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산가족민원창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4.12.23)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원적이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가호적 신고자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증명서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생사확인과 상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편지·편지봉투·사진 및 여권사본 등

제6조(경비지원 심사 및 결정) ①생사확인 및 교류지속 경비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한다.(개정 2004.12.23)

②상봉경비 지원요건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4.12.23)

③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및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12.23)

④상봉 경비 지원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를 의결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한다.(개정 2004.12.23)

제6조의1(경비 지급 결정 및 통보) 통일부장관은 경비 지급을 최종 결정하고 대한적십자사에 이를 통보한다.(개정 2004.12.23)

제7조(경비 지급) ①경비의 지급은 1가족 단위로 생사확인 경비·상봉 경비 및 교류지속 경비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생사확인 과 상봉이 동시(3개월을 기준)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봉 경비만을 지급한다.

②경비 지급은 교류성사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관련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04.3.23>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교류는 성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4.12.23>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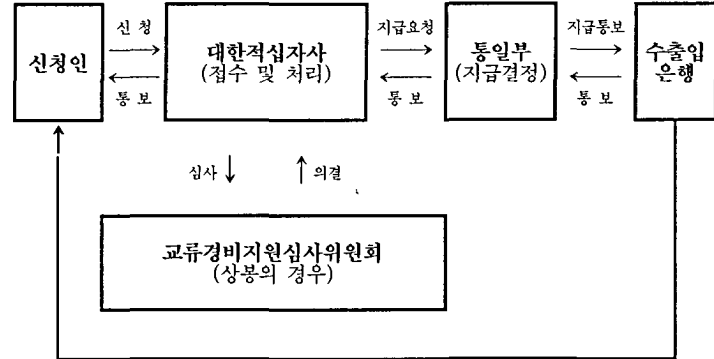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현주소		
	출생지		
② 생사확인자	성명	연령	성별
		현거주지	관계
③ 중개인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④ 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⑤ 생사확인 방법	· 편지 또는 사진접수()		· 인편을 통해서()
	· 북한가족이 남한가족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음 ()		()
⑥ 기타 (해당자)	· 생활보호대상자 ()		⑦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일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⑧ 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⑨ 수령방법 : 예금은행명 : _____ 예금주 : _____ 계좌번호: _____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귀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및 생사확인 입증자료 사본 (편지·사진 등) 3.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처리기간 : 대한적십자사 접수일부터 20일)

<별지제2호서식>

(앞면)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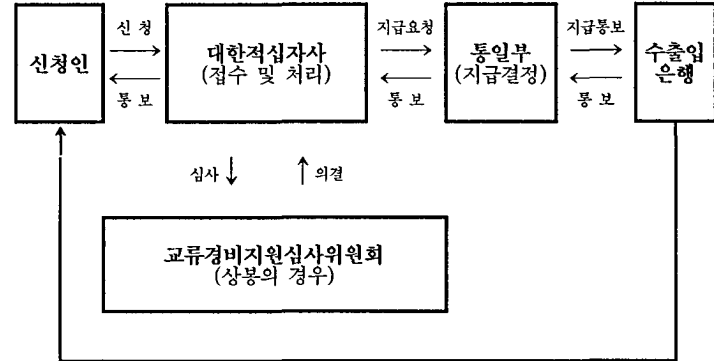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장·직위				(전화번호:)	
	현주소					
②상봉자	출생지			현거주지	관계	
	성명	연령	성별			
③증개인	성명	주선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④최초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시기 :			지역 :		
⑤상봉기간	~		⑥상봉장소			
⑦재산 및 소득사항 (배우자재산 및 소득포함) *실제금액 또는 추정 금액 기재	재산액	부동산	있음(원), 해당없음()			
		예금 및 기타 재산	있음(원), 해당없음()			
	연간 소득액	계	원			
		사업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근로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재산소득(임대료·이자수입) 및 기타 소득	있음(원), 해당없음()			
계	연간 소득	원				
⑧기타 (해당자)	· 생활보호대상자 ()	⑨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일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⑩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⑪수령방법	예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총지휘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3. 여권사본 4. 상봉사진 5. 기타 입증서류(편지 등) 6.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처리기간 : 대한적십자사 접수일부터 20일)

<별지 제3호서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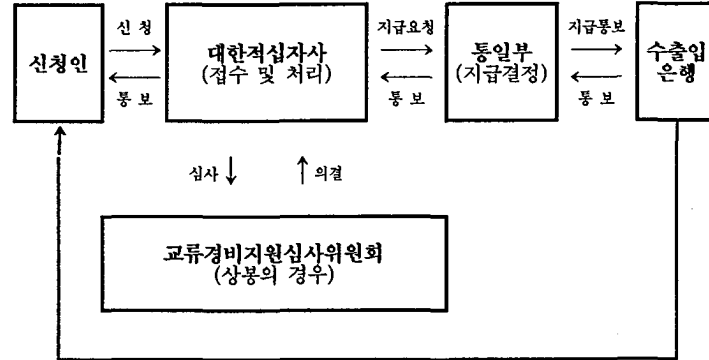
(뒷면)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현주소	(전화 :)				
	출생지					
직업	(전화 :)					
②북한의 접촉가족 (서신 신자 등)	성명	나이	현거주지	소속및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 여부
③생사확인 자 인적 사 항(편지내 용 등으로 확인된 자)						
④교류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⑤접촉일자 및 장소						
⑥접촉 방법						
⑦기타 (해당자)	· 생활보호대상자 ()		· 국군포로가족 ()		⑧북한주민접촉 신고수 리일	
	· 의료보호대상자 ()					
⑨소요 경비 내역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 (통신비 등)	
⑩최초생사확인시기 및 지역						
⑪교류 지속기간	년	개월	⑫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평균)	
⑬수량방법	예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한적십자사 총재 귀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교류지속 입증자료(편지, 사진, 계약서 사본 등) 3.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비지급(*처리기간 : 대한적십자사 접수일부터 20일)

<별지 제4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현주소	(전화 :)				
	출생지					
	직업	(전화 :)				
② 피접촉인 인적사항 (상봉자 또는 서신발신자)	성명	나이	현거주지	소속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여부
③ 생사확인 자인적사항 (상봉시 또는 편 지내용 등으로 확인된 가족)						
④ 접촉목적						
⑤ 접촉일시 및 장소						
⑥ 접촉방법						
⑦ 증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⑧ 소요경비 내역	총소요경비	주선사래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 (통신비 등)			
⑨ 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⑩ 교류 지속기간	년	개월	⑪ 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평균)		
⑫ 접촉결과 개요(특이사항)						
※ 세부내용 별지작성 및 편지 등 사본 첨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VI-7. 인도적대북사업처리예관한규정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체 소개서
2. 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6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접촉, 방북활동 등 포함)이 없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7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3. 남북협력기금사용계획서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6.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7. 기타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8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②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제9조(지원자금의 용도) ①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지원 결정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가 기금지원사업의 내용중 주요사항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사업의 내용변경, 시기조정, 추가조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의 사용한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등) ①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인 법인과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조작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1·2·10>

-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3·14>

-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기금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VII. 남북 합의서

VII-1. 남북기본합의서

VII-2.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VII-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VII-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VII-3-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VII-3-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VII-4-1. 개성공업지구 통선에 관한 합의서

VII-4-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VII-4-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VII-4-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VII-4-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VII-4-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VII-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VII-4-8. 남북해운합의서

VII-4-9.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VII-1.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 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VII-2.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 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⑤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 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

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VII-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VII-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VII-3-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VII-3-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

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 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 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 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 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이 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 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

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보장(제목에서)	보호(제목에서)
투자자산	투자재산

지분	출자몫
의장권	공업도안권
천연자원	자연부원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기업리권
국공채	공채
법령	법
법인	실체
자연인	개별적인 사람
수용	몰수
외환시장	외국환자시장
자유태환성통화	전환성화폐
정관	규약
서명	수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 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당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은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

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

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을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 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 나. 기타의 세금을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고정사업장	고정영업장
사업활동	경영활동
영위	진행
인적용역을 제공	봉사활동을 진행
권한있는 당국	해당기관
거주자 판정	거주자 확정
주소, 거소, 관리장소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생활하는 주거	생활하는 살림집
실질적인 관리장소	실제적인 경영지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건설장, 설치, 조립장
재화	물품
지배관계	종속관계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컨테이너	집합
국제적인 경영체	국제적인 운영체
조정	조절
발생	조성

수익적 소유자
국채
사용료
대가
독립적 인적용역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급여
지급받은 보수
수취인
귀속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학술연구기관
학술연구용역
지배

수익자
정부유가증권
지적소유권사용료
료금
전문봉사활동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로임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수납인
이전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과학연구기관
학술연구사업
관리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 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 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

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 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중재판정
중재인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중재인명부
법령
활동 보장
국제법의 일반원칙
구성하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서명
문본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북 측

재결
재결원
책임재결원
재결원협의회
재결원명단
법
사업 보장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내오다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수표
문건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 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2000년	주체 89(2000)년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력사적인 공동선언
용역거래대금	봉사거래대금
당해 연도	해당 년도
청산계정	청산돈자리
미달러화	미달러
청산결제기간	청산결제주기
자본의 이동	자금이동
장관급회담	상급회담
서명	수표
발효	효력발생
문본	문건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을 가진다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 VII-4-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VII-4-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VII-4-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VII-4-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 VII-4-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 VII-4-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VII-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VII-4-8. 남북해운합의서
- VII-4-9.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

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방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서의 반출입 물자와 우편물, 통행차량 및 인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물자"라 함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생산과 경영, 상주 인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2. "반입"이라 함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반출"이라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3. "통행차량"이라 함은 공업지구의 반출입물자, 인원 등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3조 공업지구세관의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에 세관(이하 '공업지구세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4조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확인

1. 쌍방은 남과 북을 왕래하는 차량(철도차량 제외)에 대하여 쌍방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세관에 사전 등록하게 하고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 가. 차량등록번호·차종·차형·생산년도 및 배기량 등
 - 나. 적재량 또는 정원
 - 다. 운행목적, 운행구간 및 유효기간
 - 라. 기타 쌍방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2. 쌍방은 통행차량 등록명부를 상호 통보한다. 이 경우 등록명부에 등록된 차량은 쌍방 세관에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3. 통행차량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통행차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의 세금 등 면제

쌍방은 통행차량에 대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수속은 따로 하지 않는다.

제6조 반출입물자 등에 대한 통관절차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와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공업지구세관에서 담당한다.
2.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의 휴대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세관검사는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실시한다.

3. 공업지구세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반출입물자에 대한 검사를 물자의 도착지 또는 출발지에서 실시한다.
4. 공업지구에 반출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5. 공업지구세관은 반출입 물자에 대하여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 반출입 절차

1.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는 반입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입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공업지구세관에서는 반출물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받은 세관 신고서류에 공업지구 반출물자임을 확인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3. 세관 신고서류에는 반출입물자의 송하인·수하인·품명·수량·가격·운송기간·출발지·도착지 및 운송인 등을 기재한다.

제8조 반출입 물자의 운송

1.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로 운송하며, 컨테이너는 출발하기 전에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임을 확인한 세관에서 봉인한다.
2. 쌍방 세관은 컨테이너에 봉인을 한 경우 봉인번호를 세관에서 확인한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쌍방 세관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관신고서류와 세관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운송물자의 세관통과를 허용한다.

4. 쌍방 세관은 세관봉인에 이상이 있거나 컨테이너 개장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관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10조 세관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세관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1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3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에 출입하는 인원·물자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공업지구내 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및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주민,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 등을 말한다.
2. "물자"란 공업지구 건설과 관리운영, 기업의 생산과 경영, 상주한 인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3. "출입"이란 인원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4. "반입"이란 물자를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출입통로를 따라 공업지구에 들여오는 것을, "반출"이란 함은 공업지구에서 내어가는 것을 말한다.
5. "운송수단"이란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물자, 인원들을 수송하거나 공업지구의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기차 및 각종 차량을 말한다.

제2조 출입통로의 지정

쌍방은 공업지구의 개발사업 착수전까지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공업지구를 연결하는 철도·도로의 출입통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검역대상과 기준·방법

1. 쌍방은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 가운데서 검역대상과 기준, 방법은 공업지구개발사업 착수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2. 전염병 발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통로를 통하여 직접 출입하는 인원·운송수단·장비에 대해서는 검역을 하지 않는다.

제4조 공업지구 검역소 설치

북측은 공업지구내에 반입·반출되는 물자에 대한 검역을 전담 실시하기 위한 검역소(이하 '공업지구검역소'라 한다)를 공업지구내에 둔다.

제5조 검역원칙

1.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여 물자를 신속히 통과시키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검역을 협조할 수도 있다.
2. 검역대상이 아닌 인원, 운송수단, 물자를 특별히 검역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와 협의하고, 검역을 하며 위생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 검역요금을 받으며, 검역요금의 기준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반입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물자를 공업지구에 반입하는 자는 검역대상물이 도착하는 즉시 공업지구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에서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에서 불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소독, 반송, 사용중지 같은 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 남측 열차·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제7조 반출물자에 대한 검역

1. 검역대상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려는 자는 검역대상 물자를 공업지구 검역소에 입고시키고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2. 공업지구검역소는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 주어야 하며, 검역에서 합격된 물자만을 반출할 수 있다.
3. 남측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반출물자에 대하여서는 검역을 하지 않고 반출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쌍방은 검역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법규를 제공하며, 상대방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9조 검역 당국간 교류협력

쌍방의 검역당국은 공업지구에 반출입되는 물자의 검역을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제10조 해석 및 적용

쌍방은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서명

발효

문본

효력을 발생한다

말한다

〈북측〉

수표

효력발생

문건

효력을 가진다.

의미한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이 아래부터는 '지구'라 한다)의 출입 및 체류를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1. "인원"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 및 체류하는 남측의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을 의미한다.
2. "통행차량등"이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 열차, 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출입"이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드나드는 것을 의미한다.
4. "체류"란 인원이 지구에서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출입통로"란 인원 또는 통행차량등이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한 통로를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인원은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출입통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철도, 도로, 해상로의 출입통로를 합의하여 정한다. 이미 남측 지역과 지구 사이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통로는 이 합의서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인원의 출입절차

1. 인원은 남측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와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통행차량등을 이용하여 출입하며, 북측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인원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보장한다.
2. 지구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인원은 체류 또는 거주를 확인하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여러번 출입할 수 있다.
3. 14세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해당 증명서에 동반자로 기재하고 출입할 수 있다.
4.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나라의 여권과 함께 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통행차량등의 출입절차

1. 자동차는 자동차 통행과 관련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 정해진 출입통로로 출입한다.
2. 선박은 선원과 승객명단을 비롯한 선박자료와 입출항시간을 북측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출입한다.
3. 열차는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출입한다.

제6조 출입심사

1. 북측은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하여 출입장소에서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필요한 출입심사, 세관검사와 검역을 한다.
2. 북측은 지구의 안전과 인원, 통행차량등의 출입상 편의를 보장하며, 남과 북은 지구의 안전과 간편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와 검역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3. 북측은 통행차량등에 승차 또는 승선하여 심사와 검역을 할 수 있다.

제7조 체류

1. 인원은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 안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입 및 체류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인원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고, 해당 증명서에 체류등록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지구에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3일전에 남측 당국 및 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체류기간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원이 해당 증명서의 체류기간 내에서 이미 등록된 체류기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출입사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 가. 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7일까지 체류하는 인원
 - 나. 지구에 장기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 다. 남과 북이 체류등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원

6. 인원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제정된 질서에 따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대상

북측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1. 국제테러범
2.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3.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
4.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게 된 해당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자
5. 남과 북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자

제9조 긴급구조조치

북측은 자연재해, 불의의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원과 통행차량등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며 남측은 이에 협력한다.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게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 지구와 지구밖 북측지역 사이의 출입

인원과 통행차량등이 지구에서 지구 밖의 북측 지역을 출입하거나 지구 밖의 북측 지역에서 지구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북측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 정보교환과 협력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통보하며, 상대측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과 북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인원과 통행차량등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수정·보충되는 내용은 이 합의서 제16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가진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며,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p>〈남측〉</p> <p>통행차량등</p> <p>교통수단</p> <p>출입심사</p> <p>출입장소</p>	<p>〈북측〉</p> <p>수송수단</p> <p>운수수단</p> <p>출입검사</p> <p>출입지점</p>
--	---

훼손

상황

주거

범칙금

부과하거나

상호

구성

발생하는

문본

오손

정황

주택

벌금

물리거나

호상

조직

제기되는

문건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남과 북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에서 차량운행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무소를 두며 이를 남북 “차량운행사무소”라고 부른다.
2. 남과 북의 분계주차장 사이 도로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운행노선을 오가는 각종 차량(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연결차 등)을 “운행차량”이라고 한다.
3.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사상, 물건의 파손, 분실 등을 “사고”로 본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상대측 차량의 안전운행 및 운전사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
2. 군사분계선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쌍방 군사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이 운전사들과 운행차량에 부여한 운전면허 자격 및 기타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제3조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도로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운행하는 차량의 통제문제
 - ②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처리
 - ③ 운행구간에서 정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 ④ 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 ⑤ 기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①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은 쌍방 당국이 임명한다.
 - ② 쌍방은 대표와 위원들을 교체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공동위원회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회의기록 등 실무 절차는 남북사이의 관례대로 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의 차량운행사무소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차량운행사무소와 제3의 장소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서 서

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차량의 운행절차와 방법

1. 상대측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 때에는 상대측 차량 운행사무소 책임자에게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2. 양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결과를 운행날짜 이전에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준다.
3. 차량운행허가증을 받은 운전사는 상대측 지역에 도착하면 해당 통과수속을 거친 후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지정된 노선을 따라서만 운행할 수 있다.
4. 운전사는 운행과정에서 상대측 교통규정, 신호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6. 운전사가 상대측 지역에서 운행노선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 또는 교통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승인결과를 운전사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한다.
7. 남과 북은 상대측 운전사가 운행목적, 교통질서,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고, 심한 경우에는 운행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취소한 차량과 그 운전사는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를 거쳐 돌려보낸다.

8. 남과 북은 자연재해, 도로보수 등으로 차량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 그 이유를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보하여 주며 그 이유가 제거되면 즉시 운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통보 및 통신·연락

1. 남과 북의 차량운행사무소 책임자는 차량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즉시 상대측 차량운행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운행차량의 운행통지와 상호통보를 위하여 차량운행사무소 직통전화, 모사전송장비(팩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락관을 둘 수 있다

제6조 정보교환

1. 남과 북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자기측의 교통규정, 신호체계, 도로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상호 제공할 수 있다.
2. 남과 북의 차량운행에 대한 정보자료를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탑승 인원 및 적재 화물에 대한 제한

1. 차량운행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태울 수 없다.
 - ①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인원으로서 차량에 태울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차량에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① 각종 무기류, 흉기류, 화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협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의약품, 각종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사회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④ 물품의 성질 및 수량으로 보아 여행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 ⑤ 위 각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8조 통행료 납부 및 의무면제

1. 남과 북은 운행노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측의 운전사와 차량에 부과되는 차량 등록, 검사 및 이와 관련한 수수료 및 각종 요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행안전 및 사고처리

1. 남과 북은 운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구

조조치를 취하고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각종 편의를 보장한다.

2. 차량의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측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상대측 연락관 또는 인원의 입회를 허용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사고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쌍방이 동일한 인원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① 부상자 규모가 10명 이상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 차량과 화물의 손실정도가 EURO 10,000 이상인 경우
 - ③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상대측이 사고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을 때
4. 남과 북은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결과가 밝혀진 즉시 그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의 운행허가기간이 지나갔으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차량의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사의 귀책 사유로 판명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고원인이 쌍방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차량의 운전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고장시 조치

1. 차량이 운행구간에서 고장 발생시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대측 구간에서 차량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연료 또는 부속품이 부족할 경우 상대측에게 기술 또는 부속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항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3조 적용범위

1. 남과 북은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 합의서를 적용하며, 이외의 사항은 도로 교통에 관한 국제협력 및 관례에 따른다.
2.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차량의 운행방법은 쌍방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5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노선

사항

표지

부착

사실

담승인원

적재화물

위해

각호

상호주의 원칙

귀책사유

지원

소요비용

부속서

문본

〈북측〉

총칙

로정

문제

표식

표기

정형

차량에 실는 인원

실는 화물

오염

조항

호상성의 원칙

잘못

방조

소비비용

보충합의서(부록)

원문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 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 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 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

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

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협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조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발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

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 통신설비
 - ② 모사전송장비(FAX)
 -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측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 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록 1〉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No.	직 명
1	분계역장, 부여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 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철도직원
인명
따른다.
부여한
사항
개최
정산
일일
입환작업
체류하는 동안
인도·인수
조정
운송수단
상호
명시된
상시출입증
탑승인원
적재화물
총포류
운전정리실
사실
상황
시행
부속

〈북측〉

총칙
철도일군
사람
준한다.
있는
문제
진행, 조직
청산
일간, 일
차같이작업
머무르는 기간
인수도
조정
운수수단
호상
지적된
고정출입증
열차에 실는 인원
실는 화물
총기류
운전지휘실
정형
정황
집행
부록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 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분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측〉	〈북측〉
구성	조직
이하	이 아래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본신업무에 맞는 범위
보좌인원	보장성원
중재인	재결원
기피신청	거부신청
이의신청	반대의견 제기
중재판정부	재결원협의회
중재판정	재결
본다	인정한다
서면	문서교환 방식
서명	수표
중재인명부	재결원명단
열거	지적
교부	제시
분쟁해결절차	사건심리
서류	문건
문서보관소	문서보관장소
연락관	연락대표
수령	문서접수날자
문본	문건
원본	원문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

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합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정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채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분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 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2.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

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 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해상운송

해상운송회사

입차

어획물

소지

해사당국

통관

해역

항행경보

하역

용역

해양사고

전복

보호조치

방제

구조·구난

무사귀환

대리점

관행

준용

교류·협력

북 측

해상수송

해상운수기관

용선

물고기

소유

해운당국

통과

수역

항해경보

상하선

봉사

해상재난

침몰

구원조치

제거

구조

안전송환

대리인

관례

적용

협력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 라. 운항 목적
 -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할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군사활동
 - 나. 잠수항행
 -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사. 어로
 -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

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 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 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 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부록 제1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회 사(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충돈수, 호출부호)					
운 항 목 적					
운 항 기 간					
출발·기항·도착항에 정 일 시					
운 항 구 분	정 기		부정기	회	
미개설항 입항 이유 ※ 미개설항 입항 신청시만 작성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통일부장관 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p>					

【부록 제2호 양식】

선박운항허가서

	접수번호		
회사(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 항 노 선			
운 항 목 적			
운 항 허 가 유효기간			
운 항 구 분	정 기		부 정 기 회
<p>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운항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p>			

【부록 제3호 양식】

20 년 월 일

해양사고통보서

보고자 :

사 고 명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내 용 (사고원인)	
피 해 상 황	<input type="checkbox"/> 인명 : <input type="checkbox"/> 선박 : <input type="checkbox"/> 화물 : <input type="checkbox"/> 오염 :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 치 사 항	
협 조 사 항	

【별표 1】

해 상 항 로 대

1. 외곽항로대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①	41-29-00N, 130-14-00E	⑦	35-02-00N, 129-22-00E
②	40-00-00N, 130-10-00E	⑧	34-19-00N, 128-58-00E
③	37-10-00N, 130-00-00E	⑨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⑩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⑪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⑫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⑬	36-00-00N, 124-25-00E
④	36-08-00N, 130-00-00E	⑭	36-48-00N, 124-19-00E
⑤	35-29-00N, 130-00-00E	⑮	38-03-10N, 123-57-00E
⑥	35-13-00N, 129-40-00E	⑯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2. 입·출항 항로대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로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홍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 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⑭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 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⑯과 38-43-06N, 125-00-24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홍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홍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홍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항 한다.

- 항로대 좌표는 세계측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북 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해역	수역
근무일	로동일
다음의 사항을	아래의 조항을
해사당국	해운당국

다만
일시
상호
명시하여
원거리
항행통보
무기부품
양·적하
훼손
기상 악화
검색
사후처리
항계
도선사
항비
선석 배정
피난
해양사고
구조·구난
방제
대응
탐재
구난
소요
대리점
수석대표
수행원

그러나
날자, 시간
호상
담아
먼거리
항행경보
무기부품
양도, 상하선
피해
일기 불량
검열
차후처리
항경계선
수로안내원
항만비
배자리 선정
대피
해상사고
구조
방지
대책
적선
구조
소비
대리기관
단장
수원

남북장관급회담
문본
성명
부정기
귀하
피해상황
조치사항
참조점
통항

북남상급회담
원문
이름
비정기
앞
피해정형
조치정형
좌표점
통항

남북교류협력법규집

발행처 : 통일부 교류협력국 경협제도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2100-5921)

인쇄처 : 현프린트(☎2273-7142)

발행일 : 2005년 12월 26일
